

#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研究陣 》

---

연구위원 : 이 승 준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

# 목 차

|  |    |
|--|----|
| <b>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b> .....                  | 7  |
| 제1절 연구의 목적 .....                             | 7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9  |
| <b>제2장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國家賠償判決의 의의</b> ..... | 10 |
| 제1절 국가배상청구의 내용과 판결 .....                     | 10 |
| 제2절 국가배상판결의 시사점 .....                        | 12 |
| <b>제3장 성폭력사건의 의의 및 특성</b> .....              | 16 |
| 제1절 성폭력범죄의 의의 .....                          | 16 |
| 제2절 성폭력사건의 특성 .....                          | 17 |
| <b>제4장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b> .....                | 20 |
| 제2절 현행 경찰수사의 개관 .....                        | 20 |
| 1. 경찰수사 .....                                | 20 |
| 2. 경찰수사와 피해자의 관계 .....                       | 23 |
| 제2절 경찰수사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 26 |
| 1. 미국 .....                                  | 26 |
| 2. 독일 .....                                  | 28 |
| 3. 영국 .....                                  | 30 |
| 4. 일본 .....                                  | 32 |
| 5. 소결 .....                                  | 35 |
| 제3절 경찰수사절차의 문제점 .....                        | 36 |
| 1. 초기수사의 문제점 .....                           | 36 |
| 2.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 .....                         | 41 |
| <b>제5장 수사절차의 개선</b> .....                    | 46 |
| 제1절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정비 .....                     | 46 |

|                                   |    |
|-----------------------------------|----|
| 1. 범규의 정비 .....                   | 46 |
| 2. 수사매뉴얼의 정비·통일 .....             | 52 |
| 3. 체크리스트의 활성화 .....               | 53 |
| 제2절 증거수집절차의 개선 .....              | 56 |
| 1. 응급키트의 활성화 .....                | 56 |
| 2. 현장 대응방안 정비 .....               | 57 |
| 3. 대질조사실의 확대 및 이용시스템의 정비 .....    | 58 |
| 4.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한 증거조사 .....        | 59 |
| 제3절 수사방식의 개선 .....                | 60 |
| 1.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         | 60 |
| 2. 진술녹화시스템의 개선 .....              | 63 |
| 3. 조사시간의 최소화 .....                | 67 |
| 4. ONE-STOP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     | 68 |
| 제4절 수사조직의 개선 .....                | 71 |
| 1. 수사경찰의 의식개선 .....               | 71 |
| 2. 피해자대책업무의 분담과 조정 .....          | 72 |
| 3. 전담경찰제의 강화 및 일원적 체계필요 .....     | 74 |
| 4. 지구대 인력의 성범죄 대응능력 향상 .....      | 75 |
| 5. 여경 성폭력 전담조사관의 확대 .....         | 77 |
| 6. 검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문제 .....           | 79 |
| 제5절 지속적인 교육과 추수평가과정의 강화 .....     | 81 |
| 1.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지속화 .....        | 81 |
| 2. 평가·점검체계 강화 .....               | 83 |
| 제6절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재정립 .....      | 84 |
| 1. 협력관계 강화 .....                  | 84 |
| 2. 수사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강화 .....         | 87 |
| 3. 신뢰관계 동석자제도의 활성화 .....          | 89 |
| 제7절 경제적 지원절차의 개선 .....            | 91 |
| 제8절 아동·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수사환경의 조성 ..... | 92 |

제6장 결 론 .....97  
 참고 문헌 ..... 99

## 표 목 차

〈표 1〉 성폭력범죄 발생현황 ..... 18  
 〈표 2〉 경찰청장 포상현황(2007년) ..... 50  
 〈표 3〉 특별승진 현황(2006년) ..... 51  
 〈표 4〉 범죄피해자 보호체크리스트 - 공동 ..... 54  
 〈표 5〉 범죄피해자 보호체크리스트 - 성폭력 ..... 55  
 〈표 6〉 진술녹화현황 ..... 63  
 〈표 7〉 진술녹화실 설치현황(2005년 기준) ..... 64  
 〈표 8〉 E-mail 조사 등(2005년) ..... 67  
 〈표 9〉 ONE-STOP 지원센터 설치현황(2008.1.31 기준) ..... 68  
 〈표 10〉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 ..... 69  
 〈표 11〉 경찰서·지구대 등 일선 치안현장 보강 내역(2006년) ..... 76  
 〈표 12〉 계급별 여경 현황('07.12.31 기준) ..... 78  
 〈표 13〉 경찰교육 실시현황('07년) ..... 81  
 〈표 14〉 민간지원단체와의 연계 실적 ..... 84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제1절 연구의 목적

2004년 12월 우리 사회는 이른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41명의 미성년 가해자와, 이들이 여중생이던 피해자에 대해 1년여간의 가해를 하였다는 점 등 범행 자체만으로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미처 그 餘波가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충격에 빠졌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사건보다 주의깊게 다루어져야 할 중대 성폭력사건을 수사한 관할 경찰의 인권침해행위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의 발생은 해가 갈수록 사건수가 점증하고 있다.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7,120건에서 13,573건으로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sup>1)</sup>, 나아가 그 수법의 잔혹화, 교묘화로 인해 강간후 증후군의 대두 등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법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실태는 초보적이며, 특히 피해자가 최초로 대면하게 되는 공적 수사기관인 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침해정도는 제일 심각하게 비춰지며, 더욱이 언론의 집중보도로 인해 경찰상 훼손의 정도는 심대한 수준이다. 그 여실한 예가 전술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다.

1950년대까지 형사법학 및 형사정책학의 관심은 犯罪者에 한정되어 있었다. 용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검거하고, 그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목표였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 범죄자의 특징, 수사를 비롯한 형사사법절차, 교정 등이 그 연구대상이 될 뿐이었다. 그러나 1948년 피해자학의 시초인 헨티히(Hentig)가 그의 저서 범죄자와 그 피해자(The Criminals and his victims)를 통해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관계는 분리

1) 김지선/이천현/홍영오/박형민/김한균/권수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7년)”, 형사정책연구원, 2007, 160면

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밝힌 후, 엘렌버거, 멘델존 등의 여러 학자들의 비판과 지지를 통해 논의가 정립·발전되어 피해자학이 형사법학의 한 분야로 위치를 잡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보호에 선도적인 미국의 경우도 1960년대에 들어서서야 犯罪被害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적 보호에 대하여 귀기울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에 선진적인 국가와는 20-3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피해자보호법의 제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침해 논란은 주기적으로 사회적 이슈거리가 되고 있어 경찰수사방식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은 성폭력 사건과 그 2次被害者化와 관련하여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1987년 8월 전남 고흥군에서 살던 임신부가 순경에게 강간당한 사건<sup>2)</sup>과, 1988년 12월 대구에 살던 다방 여종업원이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운간 당한 사건<sup>3)</sup>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모욕을 당하였으며, 급기야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는 최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상고심판결에서 극명하게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 경찰의 인권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및 그로 인한 내부징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제기 및 인용판결로 국고의 손실 및 경찰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 
- 2) 이른바 '김봉환 사건'으로, 임신 7개월이었던 어부의 아내였던 신명심은 전남 고흥군 경찰서 출장소 경장으로 파견된 김봉환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며, 출산후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고소를 하였으나,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 경찰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간통사건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에 피해자 신명심은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고 인권단체들은 '가정파괴범 김봉환 순경 강간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가해자 김봉환은 2년 뒤인 1989년에 구속, 면직되었다.
- 3) 이른바 '강정순 사건'으로 피해자인 강정순이 귀가길에 경찰관 1명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갔고 모욕과 협박을 당한 후 파출소내 취사장에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운간당하고 성병까지 옮은 사건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간통죄와 무고죄로 고소당하였으며, 가해자들도 무혐의처리 되자 수사기관의 증거 은폐·조작이라는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토대하여 밀양여중생 성폭행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방식의 개선 및 증거수집절차의 개선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대표적인 수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통해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짚어보고, 일선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범죄 수사방식의 문제점과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사방식의 개선과 증거수집절차의 변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피해자학의 주요 관심사는 범죄피해자와 잠재적 범죄피해자의 범죄 취약요인, 범죄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조장적·억지적 역할,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상관관계, 양형선고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과 비중,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보호, 범죄이후 범죄피해자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 및 경제적 보상 등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피해자학의 주요 관심사 중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보호 중 특히 경찰단계, 범죄피해자가 피해충격 이후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절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수사담당경찰의 의식개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개혁 및 제도, 시설 등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경찰수사의 인권침해 논란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경찰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여, 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의 보급, 응급키트의 활용 등 수사절차 전반의 개선을 통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경험론적 방법과 해석론적 방법론을 취하며, 문헌연구,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국가배상청구를 둘러싼 법해석학적 의미를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수사의 인권침해요소를 사례연구방법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경찰수사관행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방안을 경험론적 방법으로 고안해 내하고자 한다.

## 제2장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國家賠償判決의 의의

### 제1절 국가배상청구의 내용과 판결

이른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사건에서 경찰 수사의 피해자 인권침해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인 여중생 ○○○은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남자 꼬시려 밀양으로 가느냐,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들이 밀양 물 다 흐려왔다. 밀양을 이끌어갈 애들이 다 잡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봐 겁난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범인식별실이 있는데도 41명의 피의자들과 대질하여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으며,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지방청보고용 문건을 유출하여 인적 사항의 공개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 이유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심급별로 判示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1심 재판부<sup>4)</sup>는 “고의이건 과실이건 수사기록에 편철돼야 할 문서와 외부로 발표돼서는 안 되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경찰관에 의해 유출되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이 모두 공개됐다. 국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피해 여중생과 대질조사를 벌이고 가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피해자를 세워놓고 피해 여중생에게 가

4) 서울중앙지법 2006.11.8, 2005가합70781

해자를 지목할 것을 요구한 것은 피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면시킬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8.16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sup>5)</sup>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첫째로 사건 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동석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 여중생의 피해사실을 누설한 행위, 둘째로 위 경찰관 중 1명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위 원고의 실명 등이 기재된 지방청보고용 문건을 서류편철 등의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유출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언론에 위 원고 등이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어 주변사람들이 피해자가 위 원고 등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셋째로,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를 피의자 41명과 한꺼번에 대질조사하여 위법한 수사를 진행한 행위, 넷째, 피의자들과의 분리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피해자조사를 위한 대기장소로 이용되었던 감식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위 피해자에게 ‘밀양에 뭐하로 갔노’, ‘밀양물 다 흐려났다’ 취지의 말을 한 행위들에 대하여 事實關係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는 위 4가지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하여, 국가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피해 여중생에게 3,000만원, 동생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하급심에 대하여 大法院은 2008. 6. 12. 최종판단을 하였다.<sup>6)</sup> 대법원은 범인식별실 불사용, 감식실에서의 모욕·비하 발언,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 누설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다. 먼저 범인식별실 불사용 부분에 대하여,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 놓고 범행일시와 장소별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 감식실에서의 모욕과 비하 발언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거하여 감식실 근무 경찰관의 모욕적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

5) 서울고등법원 2007.8.16. 2006나108918

6) 대판 2008.6.12. 2007다64363

하여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범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 누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경찰관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원고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원고 등의 성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의 신분 및 피해사실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제2절 국가배상판결의 시사점

대법원 판결은, 먼저 수사진행과정에서 범인식별실을 이용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질조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였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측의 임시 대기장소로 이용된 경찰서 감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담당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의 모욕적인 발언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업무상 지득하게 된 사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 不法行爲性을 인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sup>7)</sup> 먼저 대질조사 당시 당해 경찰서에 범죄식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진행상의 이유로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과 대질조사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한 수사방식은 위법행위라고 보았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sup>8)</sup>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7) 批稿,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국가배상판결을 통해 본 경찰수사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8.3 참조

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경찰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에서 본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수사상의 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달리 위 행위가 부득이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심에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의 위반은 위 규정의 목적이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고,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위 직무기준에 위반한 행위도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는 이러한 규정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반한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있다. 생각건대 경찰 내부적 효력만을 지니는 훈령이라고 할지라도 본건에서 문제된 경찰관의 행위는 條理상 인정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취지로 하는 내용이므로 현행 判例의 해석에 따를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하며, 나아가 ‘법령’은 ‘법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령을 법률로 국한하여 ‘법령위반’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만 구체적으로 위반규정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으로 감식실에 대기중인 피해자에게 담당 수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담당경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라고 보지 않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피의자와의 분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의 지시로 임시 피해자 대기실로 위 근무자가 근무하던 감식실이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동일한 논리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8) 대판 2005.6.9, 2005다8774

외관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원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찰관의 행위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가해 경찰관은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지시로 감식실에서 피해자의 대기를 감독 내지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배상법상의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케하는 지나치게 편협한 해석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sup>9)</sup>상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감식실에 있던 경찰관의 행위는 자신들에 대한 보호 내지 감독행위로서 행위 자체의 외관에서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과 관련하여 피해여중생의 피해사실을 수사 경찰관이 사적인 기회에 노래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고의로 누설한 행위와 이와 달리 공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서 보도자료를 잘못 배부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피해사실과 인적사항을 누설한 행위 모두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국가 공무원의 의무가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된다는 것이다.

고의이든 과실이든, 공적인 기회와 공간이든 사적인 기회와 공간이든 범죄피해자를 특

9)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참조

정할 수 있는 업무상 지득 사실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타당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sup>10)</sup>

본 판결은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성폭력사건의 수사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端初를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타성에 젖은 관행적 수사방식과 피해자보호에 무감각한 경찰관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넘어, 수사기관에 의해 초래된 사회 일반인들의 새로운 낙인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를 초래하여 피해자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충격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위 판결을 통해 경찰의 성폭력 사건 搜查節次의 改善과 搜查警察官의 意識改革이라는 課題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나아가 이제 성폭력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은 경찰의 자체 징계,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요청 등을 넘어서 중대하고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서 국가배상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본 판결이 여실이 보여 주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수사 시 피해자의 처우문제는 단순히 경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행정의 타영역으로 확대될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10) 동법 제21조 ①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원유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②은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성폭력사건의 의의 및 특성

### 제1절 성폭력범죄의 의의

성폭력범죄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형법상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부터, 성희롱, 페티시즘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사회학적 개념에 이르는 종합적 개념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

먼저 法律의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은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등의 반포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두 번째로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세 번째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네 번째로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마지막으로 위의 다섯 가지 부류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보고 있다.

성폭력이란 사전적으로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성폭력은 각국의 법문화, 규범형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강간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행동으로까지 외연을 넓혀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성폭행은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되, 강간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행위태양에 강간행위와 그 미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상정하며, 강제추행 등은 부차적인 범주로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강간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찰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전 범위에 걸쳐 적용 가능할 것이다.

## 제2절 성폭력사건의 특성

성폭력, 특히 강간의 문제는 고대 유럽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여성의 정조를 빼앗는 범죄로서 인식이 되어왔다. 강간은 특히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 여성에 대해 자행되어 왔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도 전승국의 전리품처럼 대규모 강간이 자행되어 왔다. 오늘날 성폭력범죄의 특성은 과거 고대나 중세, 근대의 경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성역할, 여성의 지위, 성폭력 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남성우월적인 가치관의 보편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동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양상과 발생의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성폭력범죄의 사건 자체의 특성은 대담화, 지능화, 상습화를 들 수 있다. 전쟁강간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면 성폭력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가고, 이와 함께 범행 수법 및 양상이 대담화되어가고, 결과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져 상습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면식범<sup>11)</sup>에 의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성

11) 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아무런 사전 상호작용 없이 타범행의 신고를 막기 위해 성폭력이

폭력범죄는 그 동기면에서 기타, 우발적, 미상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sup>12)</sup> 90% 이상이 거의 단독범에 의해 범해진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자의 검거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1일 이내에 검거되며 1개월을 넘는 경우는 20% 내외이며,<sup>13)</sup> 이 때 검거는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타인신고, 진정투서에 의한 경우가 1순위이며, 다음으로 현행범 검거순인데 점차 신고·고소에 의한 검거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그 비율이 높으며, 감식자료나 범죄수법 등에 의한 증거물은 1% 미만으로서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표 1〉 성폭력범죄 발생현황<sup>14)</sup>

| 연 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발생건수<br>(건) | 12,511 | 14,089 | 13,446 | 15,326 |

다음으로 加害者에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발달적 특성,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발달적 특성으로, 가해자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특정 경험을 통해 왜곡된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성매매를 일삼는 편부 슬하에서 자란 남성이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이 자신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사회화 과정으로 위법적 행동에 대한 무감각이 사회화되는 것이다. 인지적 특성으로는 피해자의 행동과 범죄 발생전 상황에 대해 인지과정의 왜곡과 착오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성적 본능과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며,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고 자신의 성폭력행사를 용인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대인관계에서 필요한 상황인지능력과 행동파악능력의 결핍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적 특성은 자존감이 부족하며, 반사회적 성향이 강

비계획적으로 수반되어 발생하는 '기습 또는 불시공격강간(blitz or sudden-attack rape)과 달리 확신강간(confidence rap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H. Schwedinger and J. Schwedinger, *Rape and Inequalit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83, 46면 이하.

12)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이전에도 비슷한 통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3) 2006년의 경우 1일 이내에 검거된 경우는 67.4%였으며, 1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는 17.1%에 이르렀으며, 2005년의 경우 1일 이내에 검거된 경우는 73.2%였으며, 1개월 이상이 걸린 경우는 14.9%에 이르렀다.

14)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08.1, 177면

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통계에서 드러나는데, 타인과 미상에 의한 경우가 70%를 웃돌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被害者측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성폭력의 경험은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불가능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심리적으로 공포감, 불안, 강박관념,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sup>16)</sup> 이에 더하여 수치심과 죄책감, 분노감과 복수심, 자존감의 상실 등을 느끼게 된다. 피해자들은 범행을 겪는 동안 인간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자존감을 박탈당한다는 공포와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에 대한 원초적 공포까지 느끼게 된다.<sup>17)</sup> 그리고 강간 후에도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재범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해 겪게될 수치심과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신상이 알려졌을 때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나아가 가해남성에 대한 분노심과 복수심을 넘어 남성에 대한 공포심과 분노심을 느끼게 되며, 기존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생활단위와 사회조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력사건의 피해는 여타의 범죄보다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기간에 있어서도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15) 2006년의 경우 타인이 52.9%, 미상이 21.7%로 74.6%에 이르고 있다.

16) 이경자/윤영숙/서명선,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29면.

17) 여성가족부의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103명의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후유증을 살펴본 결과, 40.7%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신체적 피해보다 약 4배 가량 높은 비율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구체적 후유피해로는 '분노, 화남, 증오심'이 28.4%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는 '무력감, 우울증, 좌절감'이 15.5%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치감, 모욕감'으로 10.3%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이 6.9%,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5.7%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1.1%는 '자살기도 등의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정신적 피해후유증, 사회적 피해후유증, 신체적 피해후유증의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75-276면 참조)

## 제4장 경찰 수사과정의 문제점

### 제2절 현행 경찰수사의 개관

#### 1. 경찰수사

##### 1) 개요

수사는 수사의 단서, 수사활동, 수사종결, 공소제기, 공판, 판결확정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과, 수사의 단서 발견을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는 과정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수사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단계에서의 수사는 이 중 狹義의 수사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여, 내사를 개시하고 용의자를 입건하며, 초동수사와 기초수사를 거쳐 수사방침을 수립하고 수사실행을 통해서 공소제기의 결정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성폭력사건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搜查의 端緒 발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수사의 단서란 내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직접 체험에 의한 적극적 단서와, 수사기관이 아닌 타인의 체험에 의한 소극적 단서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현행범 체포, 불심검문 등이 있으며, 後者의 경우 고소, 고발 진정, 범죄신고 등이 해당된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대개 범죄신고, 고소라는 소극적 단서를 통한 수사개시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른다. 중요한 점은 바로 수사의 단서 발견 단계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가 개시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범죄신고와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는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충격과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二重의 衝擊에 빠져 있는 상태이므로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출동 경찰관의 주요 임무이며, 이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기본사항의 확인과 긴

급성유무, 초동조치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이후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피해자는 은둔형 피해자가 되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의 협력자가 되게 된다. 따라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를 통하여 現場出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동 경찰관은 가급적 밀행성이 유지되는 출동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발생후 검거까지의 기간을 보면 1일 이내에 검거되는 경우가 65% 정도에 이르며,<sup>18)</sup> 성폭력범죄자가 검거되는 단서를 보면 현행범이 30% 내외이며<sup>19)</sup>, 신고·고소에 의한 경우가 60% 내외에 달한다.<sup>20)</sup> 이러한 통계는 순찰차를 이용하여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성폭력범죄의 현장에 출동할 필요는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현장에서 정복경찰관이 피해자 주변인들이 알 수 있도록 요란하게 출동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출동 시에는 가급적 여성경찰관이 동반출동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최소필요인원만이 출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의 정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이나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시킨 다음 후송조치를 취하고, 성폭력상당소와 같은 민간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가급적 다수의 남성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內査의 단계이다. 내사는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의 단서를 조사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부터 용의자가 된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요하지 않는 범죄발생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된 사건의 경우 내사단계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18) 2004년의 경우 6,907건으로 67.6%, 2005년의 경우 7,584건으로 73.2%에 이르며, 2006년의 경우 8,428건으로 67.4%에 이른다(대검찰청, 범죄백서 참조).

19) 2004년의 경우 3,081건으로 30.1%, 2005년의 경우 3,046건으로 29.4%에 이르며, 2006년의 경우 3,901건으로 31.2%에 이른다(대검찰청, 범죄백서 참조).

20) 2004년의 경우 5,980건으로 58.5%, 2005년의 경우 6,050건으로 58.4%에 이르며, 2006년의 경우 6,810건으로 54.5%에 이른다(대검찰청, 범죄백서 참조).

立件단계는 경찰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이 단계부터 용의자는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환된다.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범죄사건부에 기록되는 단계로 이 때부터 피해자는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며, 검사의 수사지휘가 개시되게 된다.

사건이 수리되면 捜査의 實行段階로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데, 초동수사와 기초수사, 수사방침의 수립, 수사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이와 같이 세분되지만, 실무상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수사의 실행단계에서는 초동수사, 기초수사, 수사방침의 수립, 수사실행 등이 단계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동시적·복합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이다. 피해자는 당해 범죄에 대한 직접적 체험자로서 사건의 실체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진술하는 참고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피해자의 협력없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우며, 따라서 피고인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참고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질시켜 신문하는 것도 허용되는데, 여기에서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은 피해자의 피해충격이 완화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므로 대질조사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대질조사실을 이용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가급적 차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送致단계이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권은 검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경찰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수사를 종결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송치이후에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捜査의 終結 단계이다. 경찰에서의 수사와 검찰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되어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범죄혐의에 대한 적용법규가 확정되면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결정하게 되며, 이 단계에 이르면 수사의 종결이 이루어진다.

## 2. 경찰수사와 피해자의 관계

### 1) 피해자의 지위

수사관 과거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과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주장<sup>21)</sup>도 있었으나, 이제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하고, 제기된 공소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2)</sup>

이러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며, 나아가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여부의 결정과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하여 기소후 공소의 유지, 공소의 유지·수행을 통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를 이끌어내는 것이 추가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의 목적 중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목적 구현이다.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건관련자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형사소송법의 중대가치를 실현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수사의 개념과 목적을 통해서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인 처벌을 위한 수사과 불가분의 관계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죽거나 직접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하여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피해자의 지위는 고소인, 참고인, 증거의 방법, 절차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능동적으로 수사절차에 개입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여 告訴人이 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강간죄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된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參考人의 지위에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

21) 김기두, 형사소송법(진정신판), 박영사, 1987, 193면

22)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41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35면; 임동규, 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08, 121면 등

우 피의자 아닌 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 전단), 피해자가 바로 참고인이 되며 피의자 아닌 제3자로서 넓은 의미에서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체험사실을 진술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에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두고 있어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으나, 일반 사건에 있어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기타의 證據方法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임의수사인 실황조사와 같은 기타의 증거방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황조사는 교통사고·화재사고 등에 있어 수사기관이 사고현장의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sup>23)</sup>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절차의 대상이 될 뿐이다. 즉 형사절차에 있어 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기소의 제기와 유지에 관여하고 공판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2) 경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참고인에 불과하다. 수사절차상 피의자 아닌 제3자로서 수사기관에 자신이 체험한 사실의 진술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원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처럼 과태료의 부과나 구인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는 최고의 정보제공자가 바로 피해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조력과 협조없이는 범인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검거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조력이나 경찰 수사관의 노력으로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인하거나, 피의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공소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공판에서 주효하게 사용될 증거의 수집과 보존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검찰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많고, ‘기소유예’의 비율이 낮는데<sup>24)</sup> 이는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고소기간

23) 임동규, 앞의 책, 509면, 신동운, 앞의 책, 698면

이 경과한 경우 처벌이 어려우며, 현행범이나 의사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이나 신고를 늦게 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5)</sup>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어도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조차 피해사실 인정에 소극적일 때에는 범죄는 있고, 범죄자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만다.

여기에서 과거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 취해왔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수사절차에 있어 피의자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이다. 피의자의 조기 검거와 신속한 공소의 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서포트'중심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으면서 형사절차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적 기관이 경찰이다. 여기서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자신의 각종 피해, 물질적·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범죄인이 검거되어 자신으로부터 격리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기대치가 높은 단계인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서포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실망에 빠지게 되고 수사기관에 비협조를 결심하게 되고 나아가 불신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비협조와 불신은 결국 범죄인의 조기검거를 막아 무고한 다른 시민이 희생되는 재범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 단계로서 대부분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피해자가 검찰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한 서포트를 받기 전에 초기 서포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점에서 경찰과 피해자의 관계는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형사절차의 목표에 가려져 피해자를 증거방법 내지 증거획득의 객체로만 취급하였으나, 최근 몇 년 성범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의 문제가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제도들과 법안들이 신설되었지만,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26)</sup>

과거 범죄학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더 자주 피해를 당하는지, 또한 왜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전형, 피해성향, 취약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피해자를 연구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24)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태정/정유희,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7, 110-111면

25) 전영실 외/ 앞의 책, 112면

26)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4, 6면

관계, 양자간의 상호작용, 범죄행동, 범죄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와 범죄자, 피해자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역동적, 일방적 접근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태도, 행위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형사사법제도의 의사결정능력의 향상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해자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된다.<sup>27)</sup>

이러한 맥락에서 범죄에 대한 경찰의 인지나 간접적 수사 단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의 형사사법절차의 개시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절차 개시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은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형사사법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경찰수사와 피해자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 미국

미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는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어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68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책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곧바로 같은 해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The Victim & Witness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피해자 처우의 원칙이 제시되었으며, 1984년 ‘범죄피해자법(The Victims of Crime Act of 1984)’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경찰의 피해자 대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범죄 가해자 못지않은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피해자의 권리운동(The Victims Rights Movement)’이 연방과 주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1980년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영향

27) 이윤호, 피해자학, 박영사, 2007, 120면

을 주었다. 이 무렵 자연스럽게 민간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의 방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하는 피해자 지원단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sup>28)</sup> 그 이후 1984년 범죄피해자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법무부 범죄 피해자 대책실(Office for Victims of Crime, U.S. Department of Justice)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범죄피해자 기금의 운용, 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전문가 연수, 연방 법을 위반 범죄의 피해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29)</sup>

미국의 경찰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15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제국의 경찰제도의 특징들이 접목되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자치경찰제가 성립되었다. 애시 당초 자치경찰제의 목적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독립의 이념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과 시민에게 경찰권을 위임하여 돕으로써 국가기능의 축소와 견제를 위함이었지만, 주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의 운영으로 현재는 독자적인 경찰운영체제로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경찰조직의 등장 및 운영의 이념은 수사를 비롯한 경찰의 기본적인 활동전반에 基底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쳐 민간과 수사기관과의 협력관계 등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 원조와 권리의 보장, 경찰관들의 피해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의 측면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제경찰장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를 중심으로 하여 그 산하기관인 피해자 지원 위원회(Victim Services Committee)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처우향상을 목적으로 범집행자들이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대응을 발전시키고, 피해자의 7가지 필수 요구인 접근, 지원, 지속, 음성, 정보, 안전, 공정성에 대해 국가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피해자 대응을 위한, 정책, 훈련, 입법적 발전, 피해자 및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과 조언, 대두되는 피해자지원 이슈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0)</sup>

28) 이 무렵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의 강간구원센터(Rape Crisis Council)가 설립되었으며, 1975년에 이르러서는 전국범죄피해자 지원기구(NOVA)가 창립되었다.

29) [www.ojp.usdoj.gov/ovc](http://www.ojp.usdoj.gov/ovc) 참조

30) [http://www.theiacp.org/div\\_sec\\_com/committees/Victim\\_Services.htm](http://www.theiacp.org/div_sec_com/committees/Victim_Services.htm) 참조

이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관련있는 실무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피해자 대책으로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의 피해자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과의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서, 보안관 사무실에 상주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을 통한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 및 이후 법정출두시 지원 및 동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요청할 경우 민간기관과 연결해 주고,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살인·성폭력과 같이 충격이 큰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 신청을 돕고 있으며, 증거로 쓰인 물품의 환부를 위해 조력하고 있다. 보상내용은 주로 치료비, 카운슬링 비용,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 생활비의 손실(살인사건의 유족), 장례비용 등이 있다.<sup>31)</sup>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피해충격 진술서<sup>32)</sup>의 진술에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이 전담관으로 지정되어, 수사과정상 요구되는 절차와 피해자 처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이 각 주 경찰의 대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 2. 독일

독일은 피해자보호에 있어 범죄인의 처벌에 주안점을 둔 제재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범죄인과 피해자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체계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1) CRIME AND VIOLENCE PREVENTION CENTER, CRIME VICTIMS HANDBOOK, 1998, pp.1-3 참조

32)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사회적·정신적 충격(impact)에 대하여만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요즈음 추세는 부동산자로 인쇄된 양식에 범죄로 인한 일신의 변화, 범죄로 인한 카운슬링이나 치료의 경험, 수입에의 영향, 부상과 상해의 정도, 범죄로 인한 다른 지출이나 손실, 피해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변화 등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답하는 형태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대이념과 피해자 권리장전에도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담당 한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작성하고 있다.

33) 뉴저지 경찰의 경우에도 법의간호사, 변호사, 사법경찰관이 팀으로 된 SART를 운용중에 있으며, 피해자 프로그램으로는 Rape Care Program이 있다(<http://www.njsp.org/divorg/operations/vsu.html#info2>).

독일의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장은 1986년부터 논의되어 입법화되었으며, 현재는 절차상의 보장을 넘어 실체법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 1994년 범죄투쟁법을 계기로 도입된 독일 형법 제46a조는 가해자-피해자의 조정과 원상회복을 통해 과거 범죄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와 그에 대한 응보에서 벗어나, 피해자와의 화해, 조정, 피해의 원상회복을 통해 갈등·긴장관계를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그 행위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배상하였거나 또는 배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경우(행위자와 피해자간의 화해)와 손해의 배상이 행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 또는 개인적 권리포기를 요하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배상한 경우'에는 법원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1998년 도입된 증인보호법은 1986년부터 입법화된 독일 형사절차상의 피해자 권리보장에 더하여, 체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가능성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보호 방안 중 수사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참여,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신문, 신뢰관계자의 동석, 비디오기술을 이용한 신문,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정보제공, 부대소송으로 피고인의 소송절차에 직접참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34)</sup>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조사시 친족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보조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수회의 신문에 응할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비디오기술을 이용하여 초기의 신문을 녹화하고 이후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sup>35)</sup> 그리고 피해자는 범죄자의 기소여부와 형식적 재판절차의 중지 등 자신의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정보와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적극적인 참여권으로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부대소송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sup>36)</sup>

34) <http://www.berlin.de/polizei/praevention/opferschutz/index.html> 참조

35) 독일 형사소송법 제168조의 e 참조. 경찰에서의 신문뿐만 아니라, 검사, 법원에 의한 신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16세 이하의 자가 피해자로 신문을 받는 경우 통상 의무적으로 녹화한다.

36) [http://www.im.nrw.de/pm/030308\\_1300.html](http://www.im.nrw.de/pm/030308_1300.html) 참조

### 3. 영국

영국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된 것은 2001년 2월 런던경시청의 서비스우선순위로 강간수사의 채택을 계기로 기획서비스인 사파이어(Sapphire) 프로젝트가 실시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 대책의 체계적인 확립은 1990년 내무성이 피해자헌장(Victim's Charter)'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기본 권리와 경찰의 피해자 처우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방향설정과 세부적인 시행사항이 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된 대책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영국의 경찰은 기본적으로 앵글로색슨 시기부터 자치치안의 대변자로서 관할 지역 주민의 권한위임과 통제에 의해 운영되던 전통에서 경찰의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고, 여기에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시작되었다.<sup>37)</sup> 이러한 전통속에서 산업혁명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신경찰(런던경시청)의 창시, 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범죄의 증가, 수뢰와 인권탄압과 같은 경찰내부조직의 문제 등을 거치면서, 영국 경찰은 자치치안이라는 영국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범죄의 다수화·광역화·전문화·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집권적 통제장치를 확대하고 경찰의 치안행정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들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분권화의 확대라는 조화되기 어려운 2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영국 경찰의 역사는 런던 경시청이 창립된 이후, 런던 경시청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다. 전통의 지방자치적 경찰제도를 수정하여, 런던경시청을 총괄로 하는 국가경찰제로의 수정, 그리고 다시 런던자치정부 수립과 함께 경찰위원회의 도입으로 인한 자치경찰로의 복귀는 영국 경찰변화의 선도를 이끌어 왔다.

37) 영국의 경찰제도는 로마제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5세기경 로마군의 지배로부터 영국이 벗어나 앵글로색슨족이 정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10호씩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이들에 속한 성인 남자들이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치안의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 전통은 9세기에 이르러 알프레드 대왕이 모든 세대를 10가구 단위로 묶어, 소속 성인 남성에게 치안의무를 부과하면서부터, 100호단위가 생겨나고 100호 단위의 수장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100호단위의 주민들이 constable을 선출하여 범죄인을 추적, 체포하고, 마을의 중요재산인 말과 무기관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영국의 최초 경찰관인 자경대장이 생성된 것이다(T. A. Critchley, A History of Polic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Constable, 1978, Chap I 참조)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지닌 영국도 2000년 초반부터 성폭력범죄의 발생이 나날이 증가하였으나, 경찰의 공식적인 범죄통계와 달리 강간사건의 범죄자가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높지 않아 국립기소청이 강간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법시스템의 점검을 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경찰단계에서는 2001년 2월 런던경시청의 서비스우선순위로 강간수사의 채택을 계기로 기획서비스인 사파이어(Sapphire) 프로젝트의 실시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sup>38)</sup> 즉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범죄수사지원관(SOIT)이 피해자와 최초의 접촉을 하도록 하였으며, 수사관들에 의한 24시간 긴급전화의 개설, 각 자치구별로 성범죄 수사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처우개발과 윈스톱지원센터인 '헵터(Haven)' 프로젝트에 근거한 피해자의 검사 및 의료조치의 실시<sup>39)</sup>, 성범죄매뉴얼의 제정 및 갱신을 통한 경찰관의 행동지침 마련, 강간 피해자 인터뷰의 비디오 녹화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사파이어 프로젝트는 강간범죄를 목표로 하여 내무부, 경찰장협회, 국립기소청, 학계, 민간기구 등의 다양한 의견과 협력을 통해 실시되었는데,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육을 받은 신중한 경찰관들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사건의 발생과 향후 절차, 지원단체와의 연계, 병원진료의 예약, 고용주에의 통보, 보호 및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 보호관(chaperone)을 통해 강간피해자들을 원조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원조하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절차진행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위축되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해자가 유일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인 피해충격 진술서의 제출에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 곤란의 해결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에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주도하에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지원단체를 알선하여 이들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38) <http://www.met.police.uk/sapphire/faq.htm> 참조

39) [http://www.met.police.uk/campaigns/sapphire\\_campaign\\_08.htm](http://www.met.police.uk/campaigns/sapphire_campaign_08.htm) 참조

#### 4. 일본

일본 경찰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절차는 2004년 犯罪被害者等基本法<sup>40)</sup>의 제정을 계기로 대폭 수정되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방향이 잡혔으며, '범죄 피해자등 기본계획'에 의거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 1996년 경찰청이 '피해자대책 요강'을 마련하여 전국 경찰에 시달하여 실시토록 하고, 범죄수사규범을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범죄 피해자 대책을 운영하였으나,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sup>41)</sup>

일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의 경감과, 성범죄 피해의 잠재화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수사지도관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 본부에 성범죄 수사담당과에 성범죄 수사지도관을 설치하고, 같은 과의 성범죄 수사지도계에 여성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성범죄 수사에 관한 지도체제의 확충을 실시하고 있다.<sup>42)</sup> 이에 더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성별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경찰본부나 경찰서의 성범죄 수사 담당계에 여성 경찰관 등의 배치를 추진해 왔다.<sup>43)</sup>

그리고 초동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해 성범죄 수사 증거채취 세트와 성범죄 피해자 수사용 더미 인형도 정비하였다.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의 인지 후 증거채취를 실시함에 있어 범죄 피해자 등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증거 채취용 도구나 피해자의 환복용 의류 등을 정리한 성범죄 수사 증거채취 Kit를 비치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피해상황을 재현

40) 平成十六年十二月八日法律 第百六十一号

41) <http://www8.cao.go.jp/hanzai/whitepaper/index.html> 참조

42) 그 결과 2007년 4월말 현재,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 본부의 성범죄 수사 담당과에 성범죄 수사지도관을 설치하고 있어 전국의 성범죄 수사지도계원은 274명이며, 여성 경찰관은 117명에 이르고 있다.

43) [http://www8.cao.go.jp/hanzai/whitepaper/w-2007/html/zenbun/part2/s2\\_2\\_3\\_02.html](http://www8.cao.go.jp/hanzai/whitepaper/w-2007/html/zenbun/part2/s2_2_3_02.html) 참조  
2007년 4월말 현재,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정청취 등을 실시하는 성범죄지정 수사원으로서 지정된 여성 경찰관은, 전국의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5,459명에 이르고 있다.

할 경우,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피해자의 모형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 수사용 더미 인형을 전국에 확대 보급하였다.<sup>44)</sup>

나아가 성폭력피해자가 수사진행을 위하여 지불한 진단서료, 검안서료, 초진료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신체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부담의 경감을 위해, 피해와 관련되는 진단서료, 시체검안서료, 초진료의 비용을 원조하고 있다. 또한, 병원진료에 있어서는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 의사에 의한 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제휴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수사단계에 있어서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의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범죄 피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응접세트를 갖추거나 조명이나 내장을 개선한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도도부현의 경찰서에 '피해자 용무정청취실'을 정비하였다.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범죄 피해자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초를 둔 사정청취나 실황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동식 피해자 용무정청취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피해자 대책용 차량을 도입하여 범죄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신고의 수리, 사정청취 등에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용 차량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강하였다.<sup>45)</sup> 또한 각 현의 공공시설, 호텔, 대학 등의 경찰 이외의 시설에 있는 상담회장을 대차하여 피해자조사에 사용하고 있다.<sup>46)</sup>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비디오 링크 등의 조치를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보다 적절히 재판에 반영시키기 위한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제도나, 증인으로 증언에 나갈 경우 부담과 불안울 경감하기 위해 비디오 링크 등의 제도를 운

44) [http://www8.cao.go.jp/hanzai/whitepaper/w-2007/html/zenbun/part2/s2\\_2\\_3\\_03.html](http://www8.cao.go.jp/hanzai/whitepaper/w-2007/html/zenbun/part2/s2_2_3_03.html) 참조. 2007년 4월말 현재 증거채취 kit는 2,373세트, 더미 인형은 1,443개 비치하고 있다.

45) 2006년과 2007년에 피해자 대책용 차량을 각각 58대씩 증강하였다.

46) 검찰청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합실을 설치하였다. 피의자 등의 사건 관계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범죄 피해자들의 심정에의 배려와 정신적 부담의 경감 때문에, 2006년에 신설된 검찰청 4청사에 피해자 전용 대합실을 설치했다. 2007년도 중에 재건축이 완료할 전망의 검찰청 1청사에 대해서도, 피해자 전용 대합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그 이외의 검찰청에 대해서는, 공간,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향후 피해자 전용 대합실의 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용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민사소송에 있어 범죄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에, 보좌(付添), 차폐, 비디오 링크 등을 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회의나 연수 등의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서, 수사 현장에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있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팸플릿에도 이러한 제도의 정보를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용 휴대 전화를 개설하여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큰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과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직원이 원활하고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활동용의 휴대 전화를 활용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측면으로 일본 경찰은 피해자 안내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범인의 검거와 수사절차의 진행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 안내서에는 형사절차의 진행, 피해금부제도, 지원기관, 담당경찰관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신고시 피해자에게 교부되고 있으며, 피해자 연락제도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발생하는 재범의 우려와 신변 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각 도도부현 경찰에 살인 피해자의 유가족용, 성범죄 피해자용, 기타 신체범죄 피해자용, 교통사고 피해자용 등 다양한 피해자 안내서를 구비하여 탄력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48)</sup>

일본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교육 및 연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유형별 교양 비디오를 매년 제작하여 도도부현 경찰에 배부하여 피해자 대책의 교육에 쓰이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상담소 및 여성 상담소 등에 직원의 전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원 등에 대한 연수의 충실에 힘쓰고 있는데 각급 경찰학교와 관서내 직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 전문가를 통한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아동이나 여성의 범죄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의 유의점 등을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를 통해 아동이나 여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배려를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DV 피해자나 인신 거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공적 쉼터로,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부인 상담소의 운영에 있어 적절한

47)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의 사이에, 증인 심문 시에 보좌 조치가 취하여진 증인의 수는 98건, 증인심문시에 차폐조치가 취하여진 증인의 수는 1,566건, 비디오 링크 방식에 의한 증인심문을 한 경우는 312건이었다(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자료)

48) 安田貴彦, 警察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対策, 警察學論集, 第56卷第1号, 2003, 44면 이하

피해자 대응을 위하여 매년 후생 노동성의 주축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에 대해 실시하는 전문 연수나 계발에 걸리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형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수속의 우선 방청을 보장해 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소송에 부수 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죄 피해자등이 형사사건의 공판 수속을 우선적으로 방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대책면에 있어 일본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민간단체에 연계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와 같은 피해자조사 연구를 민간기구에서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법기관에 반영하고 있다.<sup>49)</sup>

## 5. 소결

외국의 경찰수사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실무와 피해자 보호시책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여러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성범죄 전담관의 수사, 여성 경찰관의 수사담당, 수사환경의 조성, 의료지원, 경찰관서 조사시설의 개선, 수사기관의 조사시 동석허용, 피해자 증언시 영상녹화,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민간피해자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연계, 피해자구조금의 지급안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각국의 법문화와 형사정책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개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시 다시금 충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서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조심스럽게나마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

49) 被害者支援道民セクター, 平成 18年度 被害者支援調査研究事業, 2007.3, 34면 이하 참조

상 피해자 보호제도들은 外形的으로는 피해자보호에 선진적인 국가들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선진국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보호 조치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20~30여년이 뒤쳐져 있던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외형적으로 잘 갖추어진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하드웨어는 잘 구비되어 있으나, 그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여성의 보호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요란한 하드웨어만 있다고 해서도 안되며, 정렬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운용중인 제도를 보다 피해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 제3절 경찰수사절차의 문제점<sup>50)</sup>

#### 1. 초기수사의 문제점

##### 1) 조사방식 및 조사태도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즉시 피고인을 유인하여 자신의 거주지 관할 파출소까지 함께 오게 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던 경우, 그런 정도의 재치있는 여자라면 범행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여러가지 정황으로 비추어 충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sup>51)</sup>는 판결은 과거 司法機關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밀양 여중생 사건’이후 인권보호센터의 설립과 인권보호지침 등의 지속하달로 이러한 의식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50)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문제점 이외에도 범규 및 지침상의 문제점들이 있으나, 이는 제5장 수사절차의 개선 1. 관련 범규 및 지침의 정비(49면 이하) 부분에서 개선점과 함께 詳論하기로 한다.

51) 대구고법 1986.6.1. 제1형사부 85노1059

‘밀양 여중생 사건’과 ‘유영철 사건’을 겪으면서 경찰은 범죄인의 조기검거 못지않게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인권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sup>52)</sup> 또한 본청의 인권보호시책이 예하 집행관서에까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급 경찰관서에 청문감사(담당)관과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경찰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인식, 즉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상처를 주는 말이나 모욕적인 발언, 진술을 의심하여 범죄피해사실을 부정하는 경찰관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의 피해자처우 선진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는 상당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까지 이러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었다.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일찍이 깨달은 선진국은 경찰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의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지금은 거의 일소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실무매뉴얼은 “왜 소리지르지 않았느냐”, “늦은 시간에 왜 거기에 있었느냐”, “밤늦게까지 남자하고 단 둘이서 술 마시면서 있었으면 당신도 은근히 원했던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아 비난하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으로 절대금지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sup>53)</sup> 과거 이러한 언행은 경찰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52) 2005년 2월 22일 경찰청에 설립된 인권보호센터는

1. 경찰업무과정의 인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정책의 기획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신고·상담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5. 인권관련 정책, 제도, 법령에 대한 의견제시
6. 인권수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시민인권보호단 운영 지도
7.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 등과 업무 협조
8. 인권시책 이행 실태 확인·모니터링·평가
9.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53) 경찰청, 對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2002, 94면

[사례]

20대 여성이 강간미수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생각이 있었으니 따라간 거 아니었나, 그 시간대에 남자들과 술 먹은 것 보면 그런 여자다”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였다.<sup>54)</sup>

다행스럽게도 ‘밀양 여중생 사건’ 이후,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던 경찰관의 문제있는 언행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찰관들의 반피해자인권적 의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국민의 이중적인 법의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과거 강간에 대한 통념에 대해 관심을 보인 연구가 다수 존재하는 바, 이들에 따르면 ‘强姦通念’을 가진 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며, 때로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증거부존재를 이유로 합의를 종용하기도 하며, 경찰이 강간피해자의 반항정도를 의심하거나 전력을 들추어 모멸감을 주기도 하며, 피해자의 눈을 귀가를 질책하는 등의 질문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sup>55)</sup> 강간에 대한 잘못되고 막연한 통념이 수사 경찰의 2차 피해자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二重的 法意識도 경찰관의 의식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었다. 법제 연구원의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유형으로 첫 번째가 42.7%로 부정부패를, 두 번째로 20.9%로 성폭력이라고 응답하였다.<sup>56)</sup> 1991년과 1994년의 경우 성폭행이 각각 18.9%와 36.0%로 첫 번째를 차지하였는데, 국민 대다수는 성폭력범죄의 근절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성매매 측면에서는 ‘돈을 주고 성인과 성관계를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가 53.2%, ‘대체로 허용될 수 없다’가 19.9%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답변이 7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57)</sup> 성폭력

54) 한국성폭력상담소,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3, 앞의 책, 111면

55) 김은주/이대성/이미정/이창환,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被害者學研究 제9권 제2호, 2001.10., 259면

56)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207-208면

57)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08.1., 300면

범죄가 근절되어야 할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성폭력허용도에 있어서는 성매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이중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범의식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중대성을 간과하게 만들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불법성의 정도에 대한 감각을 마비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해왔던 여성의 성매수에 대한 因襲과, 이러한 여성의 성의 상업화는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및 심각성에 대한 착오를 국민 일반에 불러일으켜 온 것이다.<sup>58)</sup>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제들로 인하여 오랜동안 수사 경찰관들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물이해를 바로 잡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청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규정과 원칙들을 일선 관서의 수사 경찰들이 얼마나 지키며,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느냐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2006년 한국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59)</sup> 아직도 수사 경찰에 의한 2차 피해자화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소수 경찰관의 잘못된 행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체 경찰관의 잘못된 행태로 보여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오지는 않는지, 경찰에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와의 친분관계, 또는 가해자 주변인물의 친분관계, 그리고 가해자의 관할경찰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유로 수사에 공정성을 잃는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자신의 피해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나아가 '차라리 신고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對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도 지적하고 있다. 즉 피해자조사시 조치사항으로 "무죄가 나오면 피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한다더라. 그러면 피해자가 고생이 될텐데 지금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겠느냐?"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를 종용하는 태

58)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는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이 있다.

59) 2006년 상반기 상담통계 5면에 따르면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로는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에게 강간피해가 있어 고소한 건, 강간 피해를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이 자신의 차로 유인해 성추행한 건, 대질 수사 중 검사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건 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중에서도 직접적 피해유발에 해당한다고 하겠다(<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자료 참조)

도, “증거가 없어 고소가 안된다”, “그런 정도로는 구속할 사안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알아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등의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sup>60)</sup>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수사경찰은 중립적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귀기울여야 한다. 수사담당자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헌법상 원칙인 적정절차의 원리가 형사소송의 전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사경찰의 사건에 대한 조사태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무려 28.3%는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며,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25.2%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58.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특히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비율이 무려 38.6%에 이르렀다.<sup>61)</sup>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으며, 수사 경찰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 2) 중복조사

피해자는 경찰수사에 있어 피의자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에 놓여 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력없이 원활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단순한 증거수집의 객체가 아니며 참고인으로서 적극적인 처우의 대상이며, 사법서비스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단순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 봐왔다. 그리하여 피의자의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소환하였다.

통상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서 1~3회, 검찰에서 1~3회 정도 참고인조사를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도 이러한 관행은 유효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최소한 2번에서 많게는 5~6회까지 수사기관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피해자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피해충격의 회복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로 작용한다.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회복할

60) 경찰청, 對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2002, 94면

61)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81-282면

때쯤이면 수사기관에서 소환하여 범죄기억을 상기시켜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現在 경찰은 피해자의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질조사도 1회에 한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으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 영상녹화를 포함한 '1회의 충분하고 확실한 조사'로 피해자의 소환이 검찰단계에서도 최소에 그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조사의 문제는 조사시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장시간의 대기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은 피해자를 긴장속에 오랜 시간 머물게 함으로써 정서적 불안을 야기 내지 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약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피해자가 경찰서에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사과정에서도 중복질문은 지양되어야 한다.

## 2. 증거수집절차의 문제점

### 1) 증거의 산일

성폭력사건의 그 특성상 실질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피해 여성의 신체에 잔존하는 가해자의 체모, 정액, 상해 등이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의 경우 이처럼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채증하는 것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충격과 방어본능으로 인하여 목욕을 하고 병원에 가거나, 경찰신고를 하게 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인의 검거시 검거단서는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타인신고, 진정투서에 의한 신고·고소의 경우가 1순위이며, 다음으로 현행범 검거순이며, 감식자료나 범죄수법 등에 의한 증거물은 1% 미만으로서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sup>62)</sup>

이러한 현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발견되는 일체의 증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감각에만 의존해 임검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제공하는 증거에 대하여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종종 사건현장에서 범죄감식반이 도달하기 전에 출동 경찰관 전원이 범죄현장을 누비고 다니거나, 가장 먼저 출동한 지구대 인력이 사건현장을 보존하지 못함으로써 증거가 산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62)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신고·고소의 경우가 6,810건으로 54.5%이며, 현행범이 3,901건으로 31.2%며, 증거물에 의한 경우가 71건으로 0.6%에 불과하다.(범죄분석 2007 참조)

범죄신고단계부터 신고를 수리한 경찰이 채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여 줌으로써 피해현장에서의 증거산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2) 부적절한 대질신문

### ㄱ) 대질신문 전후과정에서의 조우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대질조사시 유의사항으로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규정상으로만 보면 대질신문과정 및 그 전후에 피의자가 피해자가 만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밀양 여중생 사건’이후로 직접적인 문제점으로 인식하여 우회통로 개설, 범인식별실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와 조우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철저한 배려가 필요하다. 통상 피해자의 참고인조사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가해자측, 즉 가해자의 변호인, 가족 등과 세상의 이목을 끄는 사건일 경우 취재 언론 등이 관할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상황을 실무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조우방지를 위한 형식적인 조치만 다하는 것은 수사경찰의 피해자보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합의라는 명목아래 가해자측이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가족과 접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밀양 여중생 사건’에서 범행이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 즉 학생으로 복귀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가해자측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성폭력 피해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합의를 위해 가해자측에게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기대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금전적 배상이 전부가 아니며, 피의자의 집요한 합의 요구가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가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바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업무상 과실에 의한 노출도 방지하여야만 한다.

### ㄴ) 대질신문과정에서의 조우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질신문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 치거나, 범인식별을 위해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강간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재범에 대한 우려에 크게 빠지게 되며, 가해자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신변에 대한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

[사례]

여학생이 남자 2명이 윤간을 당하였는데, 현장에서 6명이 체포되었으나 3명만 조사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분리신문을 하지 않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sup>63)</sup>

위의 사례는 ‘과거’ 부주의한 대질신문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질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피해자의 신변노출 방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밀양 여중생 사건’이후 경찰에서는 대질조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예하 관서의 현실은 대질조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취지를 이해하기 보다는 형식적 준수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3) 피해자 진술의 탄핵증거화

탄핵증거란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318조의 2에서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진술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만 존재하며, 참고인을 비롯한 제3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 기수여부를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63)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책, 123면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탄핵증거가 성폭력범죄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진술이 피해사실 및 가해사실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강간사건을 쉽게 접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간 피해자를 가장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소위 '꽃뱀'여성도 적지 않은 바,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극단적으로 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강간피해를 조건반사적으로 부정하는 심증을 굳히게 되며, 수사경찰로서 공정성을 잃은 수사를 진행 하여, 피해자의 피해사실 청취조차 귀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크다. 또한 한번 형성된 심증은 피해자가 진실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방향에서 진술을 획득하게 되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탄핵증거로 쓰일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 여성의 정확한 의사와 진술에 귀기울여야만 한다. 피해자의 眞意는 단지 '모텔에서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이지, '심야에 낯선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에 응하는 정숙한 여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4)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 증거조사

증거수집은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단서이다. 이는 성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초동수사 이후 수사사항의 결정 및 수사방침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수집하는 기초수사는 과학적 수사활동의 시작점으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수집은 피의자검거에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러한 기초수사는 통상 현장중심수사, 피해자중심수사, 피해품중심수사가 포함되는데, 성폭력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사활동이 극도의 주의를 요하게 된다.

[사례]

학원에 강도가 침입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시도하고 도주하여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학원생들이 다 있는 시간에 와서 현장검증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sup>64)</sup>

64) 한국성폭력상담소, 앞의 책, 124면

위의 사례는 성폭력사건에 대한 부주의한 증거조사가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범죄의 현장은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거가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범인의 현장출입관계, 유류품, 사건당시 주변 참고인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생활상태, 가정 내부사정, 대인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중심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주거 내지 직장이라는 피해자의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대한 수사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즉 증거발견과 범죄관련 중요사실의 확인이라는 순기능이 있으나, 피해자의 신분과 범죄 피해사실의 노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문제, 외적 명예의 훼손 문제 등 역기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혼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는데, 정북경찰관들이 집에 들락날락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사건관련사실을 자신들끼리 언급하거나, 사복차림으로 출동하였지만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경찰관이 피해자를 방문한 경우, 그리고 피해사실을 모르는 남편이나 시집식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초기수사를 보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미혼의 여대생이나 여고생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학중인 학교나 친구들을 통해 접촉하거나, 주변인들에게에게 출석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초수사이든 참고인조사이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만 한다. 수사진행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어 성폭력의 간접적 피해가 재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제5장 수사절차의 개선

### 제1절 관련 법규 및 지침의 정비

#### 1. 법규의 정비

성폭력사건의 수사절차 개선을 위해 먼저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령하에서 적절한 수사진행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성폭력 사건 수사와 관련된 현행 규정의 문제점에 기반한 개선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법규는 첫 번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이다. 성폭법은 1994년 제정이래 성폭력 범죄자의 가중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2003년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 증거보전의 특례, 영상물의 촬영 보존, 녹화기술의 증거능력, 전문가의 의견조회, 비디오 등 증거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 금지 등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 향상과 피해회복을 위해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개정은 의무적 진술녹화 대상연령의 상향, 수사·재판과정에서 동석가능자의 범위확대, 성폭력범죄에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누설금지 수범대상의 확대를 통해 2003년 대폭 개정의 목표와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폭법의 규정도 아직까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더 진전되어야 할 내용이 적지않다. 먼저 의무적 진술녹화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성폭법 제21조의 3 제3항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 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영상녹화를 할 필요성이 있음은 거론의 필요성조차 없다. 나아가 그 대상이 형법상 미성년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세에서

16세로 연령이 상향되었으나 연령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형사법이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고, 미성년자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의 불완전상태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成年의 女性의 경우에도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 수사지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상녹화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전문가를 통해 가장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서 증거능력 있는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술녹화실에서 동일한 性의 여성경찰관의 조사에 따라 진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법 제21조의 3 제3항은 “제1항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성년 여성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인 여성의 陳述錄畫의 證據能力과 관련하여, 현행 성폭법 제21조의 3 제4항은 2006년 개정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원칙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성폭법 제21조의 3 제3항에 “또한 성년 여성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4항을 적용시켜 성인 여성 피해자의 영상녹화물도 증거능

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專門家 意見照會의 수사과정으로의 확대이다. 현행 성폭법 제22조의 2 제1항은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법원이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인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하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정신과의사 등의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즉 법원의 증거조사 단계에서 심판부가 주도적으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들의 감정의견 등을 재판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공소장일분주의와 이를 통한 예단배제원칙의 실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의견은 참작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현행 성폭법 제21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調書 交付義務의 緩和 또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제5항은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진술녹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작성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조사의 장시간화라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를 그대로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조서작성이 필수라는 과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영상녹화를 할 경우 이때의 영상녹화물도 조서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sup>65)</sup> 즉 새로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하에서 조서의 작성을 전제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는 것이다.<sup>66)</sup> 피의자나 피고인 이외의 자에 대

65)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2007, 120면

한 영상녹화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을 통해 충격과 피해로부터 조기에 회복하여 수사의 객체에서 탈피함은 물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그렇다면 진술녹화를 하는 경우 통상의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조서 작성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수사 경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정서적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조서작성의 의무를 다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즉 피해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며, 진술녹화와 동시에 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도록 보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4 제2항에서 집중심리주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간의 최소화를 위해 동시 조서작성의 의무를 다소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뒷받침, 즉 영상녹화의 녹취장치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성된 조서의 확인을 통한 피해자의 관련 사건에 대한 자기 진술의 충분성과 정확성 점검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간접적인 법규정비작업으로 경찰조직과 관련된 内部規程의 개정이다. 성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오명과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부의 강력한 징계와 철저한 상훈규정의 마련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 대한 경찰의 징계현황<sup>67)</sup>을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거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단초가 되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의 수사관련자들과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울산청장에게는 경고, 그리고 관할서장에게는 징계에 그쳤다. 이 정도의 처벌로는 국민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자체가 경찰청훈령으로 규칙 위반시 일정시간의 인권교육 수강조치와,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교육 수강과 인사

66) 법원행정처, 앞의 책, 120면

67)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내린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관련자에게 징계를 내린 사안 중 대부분은 자체교육과 인권위 교육수강이며, 절도피의자에 대해 폭언한 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이 형사처벌로는 유일하며, 대부분 경고와 경징계인 건책에 불과하다.(경찰청, 인권수사매뉴얼, 2006, 186-191면 참조)

조치 및 징계가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수사기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측면에서도 정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별도의 법률을 만들 필요없이 편입절차를 거쳐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여 강력한 위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 규정의 도입시 부작용이 예상된다. 특히 형사처벌까지 법제화할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피해자들의 규정 악용 등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초기에 생겨날 수 있는 과도기적 문제들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상보적으로 상훈규정의 강화·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 과거 인권퀴즈대회 등에 입상하는 경우 특진 등의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지되었다. 인권퀴즈라는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현재는 程度의 문제가 아니라 有無의 차원에서 수사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상훈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승진시 인센티브, 성과급, 특진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합리적인 형태의 평가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컨대 포상의 경우, 경찰업무수행 중의 공적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경찰서비스의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별 총량관리제하에서 실시되고 있다.<sup>68)</sup> 다만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포상 대상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기관장의 추천뿐만 아니라 인터넷, 우편접수, 언론보도 등의 창구를 통해 포상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표 2〉 경찰청장 포상현황(2007년)<sup>69)</sup>

| 구분 | 계      | 표창장    | 상장  | 감사장   |
|----|--------|--------|-----|-------|
| 인원 | 12,817 | 10,782 | 795 | 1,240 |

수사와 형사업무는 일선 경찰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문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피해자의

68) 경찰포상업무지침에서는 경찰청장 표창은 소속 정원의 10% 이내, 지방경찰청장 표창은 15% 이내, 경찰서장 표창은 35%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9)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47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에 대해서는 지침의 개정을 통해 한시적이거나 일정비율의 쿼터를 할당하여 포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경찰의 피해자보호 수준이 선진국 정도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포상은 승진시 인센티브, 성과금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컨대 간첩·중요범인 검거, 인명·재산 구호 및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유공자를 특별승진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치안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에 전문적 능력과 성과를 보이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통해 보상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는데 경감은 0.5할 이내, 경위는 1.5할 이내, 경사는 2.0할 이내에서 정해져 있으나, 여기에서 특정 비율을 다시 피해자보호 분야로 할당할 필요성이 있다.

〈표 3〉 특별승진 현황(2006년)<sup>70)</sup>

| 구분 | 계   | 경 감 | 경 위 | 경 사 | 경 장 |
|----|-----|-----|-----|-----|-----|
| 인원 | 815 | 20  | 189 | 282 | 324 |

그리고 현행 人事考課 규정의 개정도 병행되어야 한다.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 및 수사 2과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의 외근 형사요원과,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 이하의 형사요원과 조사요원, 지방경찰청 수사(강력)과장,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에 대한 수사요원의 고과평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 요원의 능력발휘를 촉진하고 수사 사건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요원고과평점규칙<sup>71)</sup>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범죄인의 구속, 불구속, 피해품의 회수 등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 피해자보호에 대한 규정이 새로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기준만으로 조사요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판단할 경우 피해자보호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고과평점 성적에 반영함으로써 보직이나 보상의 기초로 활용하여야 한다.<sup>72)</sup>

70)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45면

71) 개정 1996. 8. 30 예규 제167호

이처럼 포상이나 승진, 인사사고 반영을 통해, 피해자보호에 철저하지 못할 경우에만 제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逆의 경우에는 공적에 대한 보상이 돌아온다는 점을 확고히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이 피해자보호를 철저히 할 경우 자신들에게 유·무형적으로 돌아오는 보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 2. 수사매뉴얼의 정비·통일

현재 경찰이 활용하고 있는 매뉴얼 중 성폭력사건과 관련이 깊은 것은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인권수사 매뉴얼, 범죄피해자 보호매뉴얼, 아동성폭력 수사매뉴얼 등이 있다. 의견상으로부터 보면 일선 관서에서 성폭력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임장에 나가고, 피해자를 대면하는 하부 조직의 경찰관 입장에서는 많은 매뉴얼이 존재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매뉴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얼마나 자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체화하여, 생활화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현재 성폭력범죄에 대한 매뉴얼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각 매뉴얼 별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가급적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이론적 내용도 있지만 복잡한 이론과 역사적 배경 등은 직원 보수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여 최대한 매뉴얼의 분량을 줄이되, 그 내용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여성범죄 실무매뉴얼에서 ‘성폭력의 여성학적 개념’, ‘성폭력의 이론적 배경’<sup>72)</sup>과 같은 것은 현장에 출동하여 임검을 하거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장식적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인권수사 매뉴얼은 범죄피해자 보호매뉴얼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전자의 내용중 성폭력범죄 부분은 후자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실 인권수사는 수사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대원칙이나, 매뉴얼과 관련하여서는 자칫 잘못하면 屋上屋이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매뉴얼을 발간할 경우 과거 중복되는 매뉴얼에 대하여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수립되어야만 한다. 경찰은 2005년은 ‘매뉴얼에 의한 경찰운영시스템 구축’

72) 같은 취지로, 김재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3, 151면

73) 對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3면 및 7면

에 중점을 두고 직무분야별로 매뉴얼을 작성하여 총 82권에 이르는 기본매뉴얼을 등록하였다.<sup>74)</sup> 급변하는 사회환경속에서 일사분란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 관리자의 직책별로 통일된 실행매뉴얼의 마련을 통해 상황대처요령의 일원화 및 정보공유를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매뉴얼을 두가지 방향에서 발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직책별로 발간하는 것과, grouping을 통해서 하나의 업무로 포괄될 수 있는 경우 업무별로 발간하는 것이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뒤에 발간되는 매뉴얼이 전의 매뉴얼과 중복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매뉴얼이 늘수록 일선 현장에 있는 수사담당자가 매뉴얼을 찾아볼 가능성은 줄어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발간되어 있는 매뉴얼의 時宜性和 獨立性を 검토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對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이 인권수사 매뉴얼에서 정리하고 있는 기본 매뉴얼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sup>75)</sup>, 이는 매뉴얼의 제대로된 관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매뉴얼의 각 장의 마지막 부분은 도표식 점검표<sup>76)</sup>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무자가 평상시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만, 급박하게 현장에 임하거나, 출동하기 전에는 필수내용 위주로 된 도표식 점검표가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매뉴얼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될 수 있도록 形態를 改善할 필요가 있다. 매뉴얼이 두꺼워질수록 일선 수사경찰은 부담을 느끼게 될 뿐이다. 따라서 수첩형태로 제작하여 범죄형태별 체크리스트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별 체크리스트 정도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이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녹화하는 경찰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있는 상황에서 매뉴얼을 찾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신뢰 및 공감대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형태의 매뉴얼 부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체크리스트의 활성화

체크리스트란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동작을 점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74) 경찰청, 2006 경찰백서, 2006.7, 99면

75) 경찰청, 인권수사 매뉴얼, 203면

76) 예컨대 對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189면 및 190면 도표

질문을 나열한 검사용 표를 의미한다. 현재 경찰은 실무 매뉴얼의 세부 분류항목으로 또는 부록으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실무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수사매뉴얼은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도 무방하나, 범죄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하는 경찰관이나, 성폭력 응급키트를 통해 긴급하게 증거수집에 나가야 하는 경찰관의 경우 판서별로 1-2부씩 배부되어 있는 실무매뉴얼을 들고 나가서 활용할 수 없다.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매뉴얼에서 적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는 일반리스트와 성폭력범죄리스트로 이분하여, 수사단계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시하고 있다.<sup>77)</sup>

〈표 4〉 범죄피해자 보호체크리스트 - 공통

| 단계   | 점검사항   | 확인  |    | 비고 |
|------|--|-----|----|----|
|      |  | YES | NO |    |
| 신고접수 | · 침착하고 친절한 태도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사건을 청취하였는가?                        |     |    |    |
|      | · 피해자의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는가?                   |     |    |    |
| 현장조치 | · 신속한 출동을 하였는가?  |     |    |    |
|      | · 노출비노출 출동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출동방법을 선택하였는가?                       |     |    |    |
|      | ·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 수사진행 | · 피해자안내서를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및 단체를 안내해 주었는가?         |     |    |    |
|      | · 피해자를 중복 출석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계획을 세웠는가?                   |     |    |    |
|      | · 범죄유형과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사시간·장소 등을 선택하였는가?                     |     |    |    |
|      | ·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등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상처입을 만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는가? |     |    |    |
| 사후조치 | ·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지연사유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 친절히 통지해 주었는가?                |     |    |    |
|      | · 언론보도시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예상되지는 않는가?                                |     |    |    |
|      | ·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    |    |

77)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2005, 146-147면

〈표 5〉 범죄피해자 보호체크리스트 - 성폭력

| 점 검 사 항  | 확 인 |    | 비 고 |
|--|-----|----|-----|
|  | YES | NO |     |
| · 가정 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피해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는가?                                  |     |    |     |
| ·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시 가급적 여경이 병원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무료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는가?  |     |    |     |
| · 지구대·파출소는 격리된 장소에서 여경(여경 부재시 팀장 또는 소장)이 성폭행 여부만 간략히 확인하고 담당형사로부터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     |    |     |
| · 피해 여성 조사는 성폭력전담 조사관이 담당하였는가?   |     |    |     |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 동석요청시 동석하도록 하고 진술녹화를 실시하였는가?                      |     |    |     |
| · 장애인 피해자 조사시 수화통역자 동석, 전문가 조언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는가?                            |     |    |     |
| · 피의자 확인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였는가?   |     |    |     |
| ·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실행하였는가?   |     |    |     |

그런데 위의 체크리스트들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의 의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크리스트의 내용은 장래에 대하여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제거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절차가 진행된 이후 점검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진행 전단계에서 적절한 조치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체크리스트들은 확인 시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체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체크리스트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체크리스트는 수사진행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입장에서 사후점검을 통해 교정하여야 할 부분과, 현장 실무담당자로서 수사전 또는 수사중 피해자보호 관련 사항을 점검토록 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 등 출동인력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개별화 되어야 한다. 현재의 체크리스트는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 현재의 체크리스트는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형태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수사 매뉴얼의 정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체크리스트는 성폭력범죄의 수사관이 습득하고 있는 기본 직무지식을 신고접수후 범죄 현장 출동전이나, 참고인조사 전에 단시간에 점검·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경찰은 관서별, 담당자별 업무의 영역과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수첩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배포함으로써 피해자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절 증거수집절차의 개선

### 1. 응급키트의 활성화

현재 성폭력사건의 증거채취에 필수적인 응급키트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배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을 때의 경우에 해당되며, 경찰이 초동수사에 임하여 피해자를 최초로 대하는 경우 응급키트의 활용이 필요하게 된다. 성폭력 가해자의 검거가 점점 더 현행범 체포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짐을 감안할 때 응급키트의 활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응급키트의 사용은 경찰관이 하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여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사용시 어느 정도의 숙련성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 여건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초동수사 단계에서 채증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최선은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여성경찰관이 응급키트의 사용법을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증작업과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여경이 출동하지 못할 경우 피해 여성에서 직접적인 정액채취를 제외한 나머지 채증은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나, 피해자 서포터가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응급키트 사용의 필요성을 이해시킨 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2. 현장 대응방안 정비

성폭력사건의 경우 대개 범죄신고, 고소라는 소극적 단서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른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가 개시되어야 하는 시점은 바로 수사의 단서 발견 단계부터이다. 범죄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의 성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범죄를 신고하는 시점에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충격과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중의 충격에 빠져 긴장과 공포의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신고접수 및 출동 경찰관의 주요 임무이며, 이후 사건관련 기본사항의 확인과 긴급성유무, 초동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해자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에 대해 경찰이 우호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으며, 이후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 피해자는 적극적인 수사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신고접수후 現場出動이 이뤄지는 경우, 출동경찰관은 가급적 밀행성이 유지되는 출동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순찰차를 이용하여 출동할 필요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그리 크지 않다.<sup>78)</sup> 현장에서 경찰관은 최대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게 행동하여야 한다. 출동시에는 가급적 여성경찰관이 동반출동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최소필요인원만이 출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성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출동하여 피해의 정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현장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이나 성폭력 전담조사관 등이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시킨 다음 후송조치를 취하고,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민간단체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가급적 다수의 남성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선의 현장대응은 관할 지구대인력의 범행현장이 아닌 현장 '주변'에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대기하고, 수사능력을 구비한 여성경찰관과 최소인원의 과학수사팀만이 사복을 입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이다.

78) 性犯罪捜査研究會(編), 性犯罪被害者對應ハソトブック, 立花書房, 2008, 55面

성폭력사건의 경우 여성경찰관이 신고접수부터 범행현장의 임검, 초동수사, 참고인조사까지 담당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경우이다. 성폭력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반드시 훈련받은 여성경찰관이 함께 출동하고, 특별한 위험이 없으면 여성 경찰관이 먼저 현장에 임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최초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sup>79)</sup> 타당한 의견이나, 문제는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여자 경찰관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들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볼 때, 현장출동이나 피해자 대응 등의 요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여성경찰관이 많이 충원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충원된다고 하나, 그전까지는 남성경찰관들도 여성 피해자의 보호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여자 경찰관의 채용 확대와 담당 업무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단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성경찰관이나 피해자 서포터 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경기동수사대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여경의 부족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신고후 여성상담실이나 민간 피해지원단체인 성폭력상담소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출동전까지 정신적 충격과 공포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대질조사실의 확대 및 이용시스템의 정비

대질신문은 사법경찰관에게 보장되어 있는 조사기법의 일종이다. 그러나 부적절한 대질신문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영원히 가로막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감정의 유발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충격의 재발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 또한 가해자와 대면할 경우 피해자는 공포·흥분 등으로 제대로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찰은 2005년부터 지방철별로 1개소씩 전국 14개 경찰서에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범인식별과 가해자 확인이라는 수사목적의 달성은 물론 가해자와의 대면을 통한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질신문실 이용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질조사는 대개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보복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 실시되며, 이러한 사건들이

79)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2006.6, 446면

중복될 경우 대질조사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일본의 경우 대질조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대질조사실 이용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RF-ID방식을 이용한 대질조사실의 배정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의 피해자 조사를 위해서는 경찰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대질조사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노출을 통한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질조사실 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각 반별로 또는 과별로 대질조사를 할 시간을 매일매일 입력하게 함으로써 대질조사실 이용시간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대기하거나,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경찰관서의 개별 요건을 고려하되, 기본시간을 설정한, 시간별 이용관리 예약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대질조사실 배정시스템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주고 보다 신뢰감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대질조사를 비롯한 피해자의 참고인 조사시 조사일시를 비밀리에 부쳐야 하며,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올 경우에도 가해자측이나, 언론과 접촉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 출입용의 별도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서포터가 경찰서 외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피해자 안내를 담당하여, 미리 대기하고 있는 가해자측이나 언론과 조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4.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한 증거조사

초동수사 이후 이뤄지는 기초수사는 과학적 수사활동의 시작점으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수집을 통해 신속한 피의자 검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범죄현장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산재해 있어, 범인의 출입, 유류품, 관련 참고인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생활상태, 가정 내부사정, 대인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중심수사와 피해자중심수사는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수사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분과 범죄피해사실의 노출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문제, 명예훼손의 문제, 그로 인한 가정파탄 등 역기능이

표출된다.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기초수사이든 참고인조사이든, 피해자의 社會的地位와 年齡, 家庭環境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기혼여성의 경우, 남편과 시댁식구들이 범죄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들에게 범죄 피해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사를 위한 방문일시와 장소, 인원을 정확히 알려주고, 중요한 사정변경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할 경우 조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통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이나 직장인처럼 성폭력 피해사실이 학교와 직장에 알려질 경우 외적 명예뿐만 아니라 명예감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증거조사는 가급적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전자우편, 이동식 피해자조사실 등 출석조사나 현장조사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증거조사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 등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탄핵증거로 쓰일 가능성까지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이루어진 증거조사는 수사 경찰관의 부적절한 심증형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의사와 진술을 경청함으로써 피해자의 眞意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가 아니라, 同席에 동의한 것'이라는 차이<sup>80)</sup>를 파악함은 물론, 범죄현장의 부자연성과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의 모순의 발견을 통해 허위신고를 통한 위장피해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 제3절 수사방식의 개선

#### 1.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

현재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관련 정보를 시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사건초

80) 성폭력상담소에 피해자들이 상담받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피해자들은 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동석한 것이지, 성관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들은 숙박업소에 동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 강간죄의 성부가 문제되나, 수사 경찰마저 남성들의 통념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기단계에서는 형사절차의 개요와 담당수사관, 피해구조금 지급절차와 관련 지원기관 등을, 수사진행단계에서도 피해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피해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의 구속·석방, 중요증거의 발견 등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결단계에서도 사건처리 결과와 이후 형사절차에 대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sup>81)</sup> 2006년부터는 CIMS를 활용하여 사건접수·이송·수배·수사종결·결과 등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통지되는 주요내용은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명 및 사건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이송 여부, 사건종결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 문의가능한 담당자의 전화번호이다.<sup>82)</sup> 자동문자통지시스템(SMS)의 구축을 통해, 사건접수시부터 종결시까지 사건 수사의 전과정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도 과거에는 범죄신고후 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 수사 진행과정, 범죄자의 구속 등 상태가 어떠한 경과를 보이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연계된 SMS시스템은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자동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중간통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는 피해자들이 알고 싶어하며,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알게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보장 못지않은 피해자의 알권리 신장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현재 경찰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은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다만 범죄인의 보석, 구속취소, 가석방 등에 대해서도 통지할 필요가 있다. 검찰 송치이후의 문제이며, 법원의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보석을 도입하였으며, 범죄인의 보석결정과 가석방의 실시는 피해자에게는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피의자의 보석과 구속취소, 가석방 등에 대해서도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sup>83)</sup>

81)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21-22면.

82)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5면

83) 호주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감자의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 탈옥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수감단계(Security Classification)가 완화되어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단계로 변경될 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에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경찰은 자동문자통지시스템(SMS)과 더불어 被害者 案内書를 교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피해유형별·지역별로 검색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정보 등을 피해자 안내서(맞춤형·일반형 안내서)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통합 피해자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형사절차의 개요, 담당수사관의 성명 및 연락처, 피해자구조금 지급절차, 법률구조공단 및 피해자지원단체 이용 안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각 청 및 서에 따라 이러한 피해자 안내서에 대한 활용도의 편차가 매우 크다. 피해자가 범행 충격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안내서의 내용보다는 자신이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특성상 경찰관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고 향후 절차가 안내된 안내서를 받는 것이 매우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된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과 자신이 얻고자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내용 등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 안내서의 교부가 성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부족으로 귀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피해자 안내서의 중요도는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피해자 안내서도 양호하나, 보다 실질적이고 친밀한 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피해자 안내서에 수령증 양식을 부가하여 피해자가 반드시 피해자 안내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령하였다는 표시를 하게 할 필요가 있다.<sup>84)</sup>

이처럼 피해자안내서의 적극 활용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외에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하다.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4)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경찰관의 피해자 안내서에 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며, 안내서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 2. 진술녹화시스템의 개선

### 1) 진술녹화실 운영 개선

현재 디지털녹화방식의 진술녹화는 조작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진술녹화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조작의 위험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녹화방식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쟁은 불식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피해자의 진술녹화는 피해자의 조사의 최소화와 중복조사의 방지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즉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성폭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찰청 훈령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며 이를 증거로서 제출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 녹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중복조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시 진술번복의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의 영상녹화에 더하여 피해자 참고인 조사의 영상녹화는 정신적, 신체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중복조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6〉 진술녹화현황<sup>85)</sup>

|     | 총 계   |       |         | 아동성폭력 |       |         | 장애인성폭력 |       |         |
|-----|-------|-------|---------|-------|-------|---------|--------|-------|---------|
|     | 발생 건수 | 녹화 건수 | 녹화율 (%) | 발생 건수 | 녹화 건수 | 녹화율 (%) | 발생 건수  | 녹화 건수 | 녹화율 (%) |
| 06년 | 1,206 | 1,141 | 94.6    | 980   | 927   | 94.6    | 226    | 214   | 94.7    |
| 07년 | 1,748 | 1,571 | 89.9    | 1,554 | 1,395 | 89.8    | 194    | 176   | 90.7    |

※ 07년 기준으로 성인성폭력의 경우 1909건 진술녹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진술녹화는 그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진술녹화실 이용시스템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녹화를 하려고 해도 각 경찰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1-2개의 진술녹화실이 이미 사용중일 경우 진술녹화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며, 별도의 피해자대기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대기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며, 가해자와

85) 이금형, “아동·청소년 성폭력 현황 및 방지대책”, 제4차 여성정책포럼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토론문, 2008.5.21., 51면

조우하지 않을 까 하는 우려에 빠지게 된다.

〈표 7〉 진술녹화실 설치현황(2005년 기준)<sup>86)</sup>

| 구 분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경찰관서 | 247 | 32 | 15 | 9  | 9  | 5  | 33 | 18 | 12 | 20 | 16 | 27 | 25 | 23 | 3  |

여기서 RF-ID방식을 이용한 진술녹화실의 배정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경찰관서별로 설치되어 있는 진술녹화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한 피해자 조사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각 반별로 또는 과별로 진술녹화를 할 시간대를 타임테이블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진술녹화 이용시간이 중복되어 불필요하게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대기하거나, 차일로 조사가 미루어지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진술녹화실 이용은 관서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1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이용여부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의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우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조사시간의 장기화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 2) 진술녹화의 증거능력

경찰청은 2005년에 성폭력 전담조사관인 여경 256명에 대하여 진술녹화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06년에는 경찰관 331명에 대해 진술녹화 조사기법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명에 대해서는 여성폭력예방 수사과정을 교육하였다. 아울러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진술녹화 자격인증제를 시행하여 조사관의 진술녹화 실적(진술녹화 회수, 기소 여부, 전문교육이수여부)을 점수로 환산하여 1·2·3급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08. 9월 현재 자격인증 진술녹화관 1급 2명, 2급 8명, 3급 39명 등 총49명에 이르고 있다.<sup>87)</sup>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토대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86) 2007년 12월 현재로는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ONE-STOP지원센터 등 26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87) 이금형, 앞의 글, 56면; 경찰청 2008 경찰백서, 96면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과정에서, 애초의 개정안은 제312조의 2를 신설하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일정한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그 조사에 참여한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영상녹화물이 수사기관의 무기로만 사용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에 반하며, 비디오재판을 초래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의 독립증거 허용에 관한 위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이 독립증거로서 허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기억환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2004년 1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있었으나, 반대에 부딪쳐 2007년 개정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영상녹화물에 나타난 진술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전문법칙에 의거 엄격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공판정에서 법관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피해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는 녹화물의 증거능력에는 엄격한 요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공판정에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진술녹화의 경우 피고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반대신문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술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진술녹화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예상되었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 지역 14개 경찰서와 경찰청에 29곳의 진술녹화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녹화대상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에서 강력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등 모든 사건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지역 경찰서의 지난 상반기 이용실적은 모두 1,348건으로 1개 경찰서당 평균 96건으로, 진술녹화실 이용률이 2일에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88)</sup> 이에 대해서 일

선 경찰서 근무자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단계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을 녹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경찰단계에서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검찰이나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변호인도 무리한 변론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배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증거능력의 인정이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는 시행초기인 영상녹화의 실무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과 아울러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피해자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증거법의 法源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인 성폭법의 개정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현행 성폭법 제21조의 3 제3항에 “또한 성년 여성의 경우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4항을 적용시켜 성인 여성 피해자의 영상녹화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성폭법 제21조의 3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의 증거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술녹화가 피해자에 대한 중복조사의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준비된 제대로 된 내용의 문답에 의한 진술녹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검찰에서의 재조사로 인한 중복조사 및 피해자의 고통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88) 부산일보 2008.8.21자 기사(<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0821/030020080821.1008103107.html>)

### 3. 조사시간의 최소화

피해자 조사시간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중복조사의 지양이다. 이미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을 최소화하고, 대질조사도 1회에만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적절한 대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에 더하여 실질적 측면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조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의 이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이러한 조사방식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신뢰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8〉 E-mail 조사 등(2005년)<sup>89)</sup>

| 계      | 우편·팩스·E-mail 조사 실적 |       |       |       |                     | E-mail 활용실적 |              |
|--------|--------------------|-------|-------|-------|---------------------|-------------|--------------|
|        | 소계                 | 화상 조사 | 우편 조사 | 팩스 조사 | E-mail 조사 (참고인·피해자) | 조사진행 및 결과통보 | 기타 E-mail 활용 |
| 35,888 | 11,765             | 226   | 3,706 | 5,468 | 2,365               | 12,786      | 11,337       |

또한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와 달리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동식조사나 화상전화 또는 이메일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 시스템의 연동 및 개발을 통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대면조사를 통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과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국가 형벌권이 철저히 구현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조사대기시간의 최소화 측면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도 피해자의 출석시간을 미리 통지하여 조사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출석시간도 중복되지 않도록 시차출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조사 예정시간보다 일찍 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때에는 피해자가 여러 위협요인에 무방비상태로 노출

89) 경찰청, 2006 경찰백서, 306면

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조사예약시스템의 변경은 물론, 피해자 대기장소 설치와 안내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 경찰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 같지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의 피해자보호 업무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전후과정까지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조사예정시간보다 일찍 출석하여 조사중이던 가해자측과 조우하거나, 피해자가 조사종료 후 귀가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 모두가 경찰의 피해자 보호 범주내에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수사 경찰은 피해자들이 조사 예정시각보다 일찍와서 경찰서에서 무방비상태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설비를 마련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개선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4. ONE-STOP 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여 증거채취와 수사, 피해자 원호가 이루어지는 서울지역의 경찰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14개소에서 ONE-STOP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큰 피해충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우며, 신고하더라도 상담소, 경찰·검찰, 병원 등을 전전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8일 제주센터를 개소하였다. 통상 ONE-STOP 지원센터는 센터장, 여성경찰관 3명, 상담사 3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9〉 ONE-STOP 지원센터 설치현황(2008.1.31 기준)<sup>90)</sup>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br>남부  | 경기<br>북부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병원  | 경찰<br>병원 | 부산<br>의료원 | 대구<br>의료원 | 인천<br>의료원 | 조선대<br>병원 | 충남대<br>병원 | 동강<br>병원 | 아주대<br>병원 | 의정부<br>의료원 | 강원대<br>병원 | 청주<br>의료원 | 전북대<br>병원 | 안동<br>의료원 | 마산<br>의료원 | 한라<br>병원 | 15 |
| 경찰관 | 5        | 4         | 4         | 4         | 4         | 3         | 3        | 4         | 3          | 4         | 4         | 3         | 3         | 3         | 2        | 53 |
| 상담  | 4        | 4         | 4         | 3         | 3         | 3         | 3        | 4         | 2          | 4         | 4         | 3         | 4         | 2         | 4        | 51 |
| 간호사 |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0        | 13 |

90) [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7.jsp](http://www.police.go.kr/infodata/pds_07_totalpds_02_07.jsp) 참조

ONE-STOP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한번의 방문으로 증거채취, 카운슬링, 치료, 수사에 모두 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센터는 권역별 재조정, 인력의 확대, 지원센터 수의 확대 등의 과제가 있다. 먼저 圈域別 再調整의 경우 서울 서부, 경기 서부와 경남 동부의 경우, 그리고 지역적으로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급격히 인구가 팽창한 지역 등에 대해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서울 서남권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여성범죄 발생이 서울지방청 총 발생 중 성폭력 39.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ONE-STOP 지원센터가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 1곳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sup>91)</sup> 또한 급격한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가 없어 여경기동수사대 등에서 사건처리를 전담하는 비정상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sup>92)</sup> 이 점에서 예컨대 현재 경남의 마산 센터는 창원으로 이전하고, 진주지역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표 10〉 ONE-STOP 지원센터 운영실적<sup>93)</sup>

| 구분   | 피 해 자 (명) |       |       |     |      |     | 지 원 내 용 (건) |        |       |       |       |       |
|------|-----------|-------|-------|-----|------|-----|-------------|--------|-------|-------|-------|-------|
|      | 계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학교폭력 | 기타  | 계           | 상담     | 진료    | 증거채취  | 진술녹화  | 피해자조서 |
| 2006 | 4,764     | 2,868 | 1,284 | 48  | 226  | 388 | 14,699      | 7,386  | 3,592 | 1,123 | 542   | 2,056 |
| 2007 | 9,352     | 5,701 | 2,463 | 103 | 336  | 747 | 28,236      | 14,546 | 6,229 | 2,117 | 1,198 | 4,146 |
| 2008 | 668       | 413   | 188   | 7   | 10   | 50  | 2,083       | 1,118  | 452   | 147   | 84    | 282   |

그리고 人力의 擴大 문제는 현재, 지원센터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량에 비해 충분하지 않으며, 상주 경찰관(여경)의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으로 해당 지원센터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듯하다. 지원센터에서 상주하는 경찰

91) 서울 서남부지역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조사를 위해 여성부, 경찰청, 서울시 등에서는 금년 내로 동작구 대방동 소재 보라매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협의하고 예산 및 설치공간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92) 대표적인 예로 경남 김해경찰서의 경우 부산과 마산의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ONE-STOP 지원센터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자체 여경기동수사대 등의 활용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방식을 취하고 있다.

93) 이금형, 앞의 글, 53면

관은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성폭력응급키트를 이용한 증거수집시 입회·감정의뢰와 범죄인 관련 정보전파를 통한 검거활동,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이 일정기간씩 파견근무를 할 경우 기피의 우려가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검찰의 성폭력 전담검사제에서 대한 懷疑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다. 6개월에서 2년마다 바뀌는 검찰의 순환보직 제도 아래에서는 아동성폭력 전담검사제는 형식적인 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sup>94)</sup> 또한 여성 경찰관 3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나, 한명이 휴가 등으로 부재일 경우에는 2명이 근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4명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경찰병원을 비롯한 8개소는 4명이 근무하고 있다. 충분한 인력공급과 전문화된 요원이 없는 ONE-STOP 지원센터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조서작성은 무의미해지며, 경찰서 강력계에서 재조사를 할 개연성을 높일 따름이다.

그리고 ONE-STOP 지원센터의 數의 擴大이다. ONE-STOP 지원센터는 경찰 내부에서 성공한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1회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15개의 지원센터와 신설되는 서울 서남부 지역까지 고려하더라도 16개는 많지 않으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이용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 충남지역과 경남서부 지역에 각 1개소씩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엽적 문제일수도 있으나, 앞으로 신설할 ONE-STOP 지원센터의 경우는 병원 내 위치선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ONE-STOP 지원센터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는 수사, 상담, 치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으며, 자랑할 만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들은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병원 1층이나, 2층에 응급실 옆에 위치한 ONE-STOP 지원센터를 출입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노출과 주변의 시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회통로의 개설 및 안내와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정도가 약한 곳으로 위치선정

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44차 여성정책포럼'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주제로 열린 2008.5.21 포럼에 토론자로 나온 서울 남부지방경찰청 홍종희 검사의 지적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102794>)

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 제4절 수사조직의 개선

### 1. 수사경찰의 의식개선

2005년 10월 4일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이 제정되었다. 물론 이에 앞서 경찰청은 2004년 1월 피해자보호를 역점혁신과제로 선정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같은 해 6월 범죄피해자 대책실을 설치하여 피해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8월에는 경찰청훈령인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전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큰 수난이 밀어닥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피의자·피해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의 제정은 경찰의 수사활동에서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기준을 재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피해자와 관련하여서 인권보호의기본원칙(제4조)과 피해자보호의 원칙(제5조), 직무수행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의 금지(제8조),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제9조), 사회적 약자의 보호(제10조), 직무수단의 한계로서의 최소성의 원칙(제11조),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센터의 설치(제39조), 신속·공정한 수사의 원칙(제48조), 사실확인시의 유의사항(제49조), 피해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시의 유의사항(제50조), 전자식 영상장비를 이용한 화상조사(제66조), 피해자 조사시의 유의사항(제67조), 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의 유의사항(제68조), 대질조사 및 범인식별시의 유의사항(제69조), 진술녹화실의 운영(제70조), 신원 비노출을 요하는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진출 조사 및 지원(제71조), 피해자 서포터 제도의 운영(제72조), 수사상 언론공개의 기준(제83조) 등을 규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의 마련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의 도입만으로는 피해자보호 대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수사 경찰의 의식개선 등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 국민들과 언론이 경찰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보호자로 여겨 '신사적이며, 친근한 이미지'의 Bobby라고 부르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대 경찰 제도의 아버지인 로버트 필 경(Robert Peel)의 분신이 바로 개개인의 경찰이라는 국민 의식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태도, 법의식의 성숙도, 경찰의 근무여건과 처우,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여건이 구비되어야 경찰의 피해자보호대책도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은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경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하며, 그 대표적 영역이 바로 피해자보호 영역이 될 수 있다. 개개인의 경찰, 나아가 경찰조직 전반은 이른바 Paper Ethics을 새로운 조직윤리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수사활동이, 경찰조직의 피해자대책이 신문을 비롯한 매체에 기사화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지를 행동윤리로 삼는 것이다. 성폭력범죄 수사경찰관의 의식은 바로 이러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서 개선 가능할 것이다.

## 2. 피해자대책업무의 분담과 조정

현재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대책 업무는 2005년에 제정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10.4 경찰청훈령 제461호)에 의거 경찰청 수사국 산하의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에서 전담하고 있다. 경찰업무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수사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사국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어 피해자대책 업무의 분장과 종합, 조정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보호센터 피해자대책계에서 수립하는 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수사과 소속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며, 그 하위 각급 경찰서에는 피해자대책관(수사1계장)과 개별 형사팀에 피해자서포터가 지정되어 있어 피해자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대책 실시를 위한 경찰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자 대책과 기대하는 바와 거리가 먼 것은 조직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 피해자 보호가 수사과의 업무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안전

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계에 이르기까지 전범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청 수사국으로부터 경찰서 수사과에 이르는 지휘체통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경찰조직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업무효율성 확보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의 피해자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경무기획국 산하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sup>95)</sup>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정해진 직무수행을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 대책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새로운 제도와 직무지침을 개발하고 전국의 경찰관서에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감독이 아니라 조정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므로 인사·재정·교육에 관한 권한 및 업무조정권이 있는 경무기획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피해자대책계의 경찰조직상의 위치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무기획국 산하에 둘 경우 오히려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즉 경무기획국의 주도로 예산확보, 인력수급, 교육계획 등을 통해 피해자대책이 실시되고, 추후 정책추진상황을 점검·감독할 경우 지나치게 피해자대책 시행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자칫 피해자대책의 점검과 감독이 形骸化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인사, 교육, 예산을 관장하는 각 부서와 협의하는 업무는 피해자대책실과 경무기획국의 상호협조로 가능한 사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대책의 제대로된 실시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보호센터를 피해자대책의 최고 정점으로 하여 경무기획국은 평가와 점검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는 수사실무에서 성폭력 피해여성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상호 업무분장에 관한 재정리를 하여야 한다. 현재 경무기획국은 기획조정과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과 인사교육과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승진 시험의 관리 권한이 있으며,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와 성폭력·성매매에 관한 업무, 진술녹화실 및 여성상담실 운영 업무에 관한 권한을, 수사국 인권보호센터 피해자 대책계는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종합 및 조정, 범죄피해자 관련 홍보 및 교육 지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성폭력 피해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경무기획국, 수사국, 생활안전국 모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수사국의 인권보호센터는 피해자보호 업무를 통일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목표가 있다. 따라서 이들 관련 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기 위해서는 인권

95) 김용세/김재민, 앞의 논문, 443-444면.

보호센터가 중심에 서서 성폭력 피해자보호대책의 기획과 조정, 통제의 업무를 담당하고, 경무기획국에서 실행된 피해자대책에 대한 평가와 점검, 교육을 담당하고, 생활안전국 여성과에서 수사 실무의 지도를 담당하여 운영상 요구되는 제도, 즉 진술녹화실, 여성상담실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3. 전담경찰제의 강화 및 일원적 체계필요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통해 조서의 작성 등 공식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만 하여도 형사절차진행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압박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성폭력범죄 사건의 전담경찰제와 피해자서포터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국민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 형벌권과 관련된 수사절차에의 편입은 위압적이며, 권위적인 절차이다. 여기서 전담경찰관이나 피해자서포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진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임의성있는 진술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전담경찰관이나 피해자서포터제도는 조직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경찰은 2006년부터 수사능력 제고와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 심리전문요원 11명을 모집함과 함께, 성폭력 전담조사관으로 1,142명을, 이를 지휘·감독하는 성폭력 전담 사법경찰관으로 443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하여 성폭력전담 사법경찰관이 수사지휘·감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수사체제 구축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sup>96)</sup>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폭력 전담조사관외에도 성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내부 조직은 여성상담실과 여경기동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계내의 성범죄 수사지도계, 각 청 또는 서의 피해자대책실 등이다. 여경기동수사대의 경우 아동성폭력 전담반(2-3명)이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238개 경찰서에는 여경 1명이 아동성폭력전담조사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3급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계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효과적인 성폭력전담관의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

96) 이금형, 앞의 글, 56면

여기서 성폭력전담 조사관과 사법경찰관으로의 일원화 및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각급 관서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폭력범죄 담당자들을 하나로 일원화하여, 성폭력사건 처리에 대한 전문화와 분업화를 꾀하여 신속하면서도 친피해자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살인, 강도사건에 비하여 일선의 경찰관들이 강간사건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덜함을 부정할 수 없다. 살인, 강도와 같이 대상범죄에 대한 사회의 반응기제가 강력한 경우, 수사경찰관들은 피의자의 검거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이러한 사회적 반응기제가 상대적으로 약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체감도는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일선 경찰서의 강력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강력반내에서 전 인원이 성폭력사건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사건의 담당자를 지정·운용하여 성폭력범죄 전담제와 같은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도 일선 경찰서 형사과 직원들 일부에 대해서만 성폭력 수사전문과정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형사과 직원 전원이 이수대상이 되면서, 교육내용과 분량은 대폭 줄인 성폭력 수사과정 개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번 성폭력전담관으로 지정되면 1~2년만에 보직이 변경되어 전문성과 업무노하우가 축적될 겨를도 없으며,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長期補職化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서포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 상담(40%)<sup>97)</sup>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단순한 상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ONE-STOP 지원센터의 이용,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 4. 지구대 인력의 성범죄 대응능력 향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서 인력이 직접 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관할 지구대의 인력이 출동을 하게 된다. 경찰 부서 중 가장 국민과 가까운 것이 지구대

97) 경찰청, 경찰백서, 2006 참조

조직이다. 경찰은 2006년 3월 현장중심주의의 일환으로 전국 14개 지방경찰청의 정책·기획인력을 축소·재편하면서, 523명의 감축인력을 일선 치안현장에 보강하였으며, 대민부서인 지구대에도 125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여 지구대의 기능을 보강하였다.<sup>98)</sup>

〈표 11〉 경찰서·지구대 등 일선 치안현장 보강 내역(2006년)<sup>99)</sup>

| 계      | 수사·형사 | 생활 안전 |       | 교통     |      | 기 타 |
|--------|-------|-------|-------|--------|------|-----|
|        |       | 지 구 대 | 여성청소년 | 교통사고조사 | 교통외근 |     |
| 523(명) | 206   | 125   | 25    | 117    | 27   | 23  |
| 100(%) | 39.4  | 23.9  | 4.8   | 22.4   | 5.1  | 4.4 |

범죄수사규칙상 피해자가 범죄피해신고를 112로 할 경우 사건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형사기동대 차량과 112순찰차 및 외근경찰관에게 출동지시를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구대의 112순찰차량과 인력이 출동하게 된다. 이 경우 성폭력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자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통상 지구대의 경우 사건이 중대할 경우 관할 경찰서로 범죄인 및 피해자를 호송하는 것이 통례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은 지구대·파출소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조서를 작성치 않도록 격리된 장소에서 여경(여경이 없을시 팀장 또는 소장)이 성폭행 여부를 간략히 확인 후 본서에 인계토록 하고 있다.<sup>100)</sup>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즉 지구대와 파출소의 직원은 본서로의 인계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적절한 증거채취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자신들의 잘못된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등 문제의 소지가 불거지지 않도록 소극적인 조치에 그칠 따름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를 가장 앞선 단계에서 방지하는 것은 초기 출동 경찰단계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건의 경우 관할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대한 제반 여건이 구비되

98) 경찰청, 경찰백서, 2007(<http://www.police.go.kr/infodata/whitePaperView.do?id=5511>) 참조

99) 경찰청, 경찰백서, 2007(<http://www.police.go.kr/infodata/whitePaperView.do?id=5511>) 참조

100)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64면

어야 한다.

그러나 성폭력사건 최초 출동 및 ONE-STOP 지원센터로 피해자 인계의 대부분을 지구대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근무 경찰관의 경우 성폭력 수사전문과정 교육의 이수율이 높지 않다. 여기서 지구대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이를 통한 수사능력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지구대도 각 팀별로 1명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사진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 수사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구대의 임무와 특성에 맞는 성폭력 피해자보호에 대한 매뉴얼의 활성화 및 생활화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최초 접촉자이면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지구대 인력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의 인력이 범행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제거하고, 밀행성의 원칙을 최대한 유지한 채 여성 지구대원(또는 최소 인원)이 피해여성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현장대응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구대에 방문신고한 경우 피해여성을 지구대내 격리된 장소에서 격리하여 여타 민원인에게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단순히 피해자 안내서를 배부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본서 인계전까지 적극적인 피해자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여경 성폭력 전담조사관의 확대

현재 여성 경찰관들이 일선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미약한 실정에 있다. 이에 경찰청은 여성 경찰관이 타 공무원과 비교할 때 수적으로 점유율이 낮으며, 간부층인 경위 이상의 여경 비율은 매우 낮아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인력 충원시 일정 인원을 여경으로 선발하는 여경채용목표제와 승진시 여경을 우대하는 여경승진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매년 충원의 20~30%를 여경으로 선발하여 2014년까지 10%로 상향시켜<sup>101)</sup>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여경 진출이 낮은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배치를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치안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승진심사시 총경, 경정은 여경 승진대상 인원의 30%, 경감은 10%, 경위 이하는 남녀 승진대상 인원의 비율에 따라 여경에게

101) 2006년 12월말 현재 전체경찰관 중 5.25%이다.

별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 2014년까지 여경의 계급별 점유율에 있어 남경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하고 있다.<sup>102)</sup>

〈표 12〉 계급별 여경 현황('07.12.31 기준)<sup>103)</sup>

| 구분     | 계               | 경무관 이상       | 총경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총원 (%) | 9,6469<br>(100) | 72<br>(0.07) | 473<br>(0.49) | 1,543<br>(1.52) | 3,469<br>(3.60) | 19,540<br>(15.63) | 41,418<br>(45.13) | 20,653<br>(21.41) | 9,301<br>(9.64)  |
| 여경 (%) | 5,539<br>(100)  | 1<br>(0.02)  | 5<br>(0.09)   | 26<br>(0.47)    | 119<br>(2.15)   | 472<br>(8.52)     | 1,069<br>(19.30)  | 2,017<br>(36.41)  | 1,830<br>(33.04) |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찰 내부에서 여성경찰관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역은 제한적이며, 강력수사나 성폭력사건 수사 등에 있어서는 남성경찰관들의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고 있다. 남녀경찰관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여성 경찰관들이 성폭력사건을 수사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 특유의 섬세한 면을 발휘하여 동일 여성 피해자에 대한 조력과 수사진행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경찰관에 의한 성폭력전담 내지는 여성청소년계의 담당강화를 이뤄야 한다.

즉 현재 활동중에 있는 여성기동대 성매매전담반, 성폭력전담반, 장기미아추적반 등에 여경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수사과와 형사과에도 여성수사관들을 적극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라는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보직순환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필요가 있다. 즉 수사업무에 3년 정도 종사할 경우, 비수사업무로 보직순환을 시켜주어 출산과 육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직 구성원 자체가 자신의 생활에 불만을 가지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 수사관들이 성폭력 수사업무를 담당할 경우, 수사의 보조자에 그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직무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성폭력수사의 경우 증거물이 많지 않으며,

102)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40면

103)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41면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진실을 아는 등 사건의 특수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여성 수사관이 취급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적인 섬세함을 발휘하여 피해자를 배려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비협조적 자세를 전환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신문기법과 피해자 면담 및 조사기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즉 여성 수사관의 수사능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수사관 교육의 강화를 통해 여경 담당직무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경찰조직 전반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치안서비스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同性이라고 하여 전문적인 수사능력이 없는 여경을 전담조사관으로 둘 경우, 여경의 업무가 중은 물론 강력계에서의 재조사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이점에서 성폭력전담관에 대한 별도팀제 등 조직개편의 필요성 검토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성 경찰관이든 남성경찰관이든 수사진행과정에서 성별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성 경찰관의 성폭력 사건 전담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동일한 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盲信하여 피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며, 배려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것은 여전히 2차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留意하여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여성 수사관을 양성함에 있어 과도한 逆差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인 요소의 사전차단 필요하다. 즉 현재는 여경의 전체비율과 간부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남성 경찰관의 조직내 반발이 대두되지 않고 있으나, 2014년까지 10% 정도로 늘어나고, 점차 여성 간부의 수가 늘어날 경우 경찰조직의 특성상 남성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과 위헌시비에 휩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역평등조치로서 남성 경찰관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와 채용 및 승진시의 한계에 대한 여론수렴과 연구가 시작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대비가 없다면 힘들게 이뤄낸 여경의 양적, 질적 확대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6. 검찰과의 협력체계 구축문제

우리 사회에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높아지자, 수사종결권을 가진 종국적 수사기관인 검찰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 2003년 김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이었다. 검찰에서는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까지 전국의 검찰관할지역에 54개의 민간단체 형식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입장에서 사법상 필요에 의해 생겨난 비자발적 민간단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국 32개 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실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 신변보호, 재판결과 통지, 경제적 지원, 형사조정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는 피해자지원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경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과 검찰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대책의 상호관계 문제가 발생한다. 캐나다의 경우 검찰의 Victim Service 제도와 경찰의 Victim Service제도도 실제적인 연계가 없다. 다만 전자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 안내 등 법률서비스의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는 사건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검찰의 Victim Service직원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나, 경찰의 Victim Service직원이 특별히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로 연락하여 상호협력하는 정도라고 한다.<sup>104)</sup>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피해자보호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구분을 찾아내기 어렵다. 양 기관이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단순하게 판단하면 국가기관간의 업무 분장문제라고도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피해자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피해회복에 있으므로 이러한 목표에 충실하기 위한 상호간 기능 정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찰이 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자보호에 보다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단계부터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 적절한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자화는 발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104) 김영문,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캐나다의 victim service제도 -”, 해외연수 검사 논문, 2001, 59면

## 제5절 지속적인 교육과 추수평가과정의 강화

### 1.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지속화

경찰의 교육훈련은 경찰관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의식을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주어진 임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과정이다. 경찰은 국민과의 접촉 측면에서 어느 국가기관보다 근거리에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능력이 요구되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성 경찰관들의 경우 아직까지도 성폭력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성폭력 전담 조사관이나 피해자 서포터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보호 업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많다. 여기서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교육은 2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초임 경찰관에 대한 신입교육과 기성 경찰관에 대한 보수교육의 측면이다.

현재 경찰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을 중심으로 신입교육과 보수교육,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급 경찰관서별로 월 1회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국내와 해외 교육기관에 위탁 및 파견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도 별도로 지방경찰학교를 설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기본교육 및 전문직무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표 13〉 경찰교육 실시현황('07년)<sup>105)</sup>

| 계      | 기본<br>교육 | 신입<br>교육 | 전문<br>교육 | 전·의경<br>교육 | 지방<br>학교 | 위탁교육  |    | 기타<br>(특공대 등) |
|--------|----------|----------|----------|------------|----------|-------|----|---------------|
|        |          |          |          |            |          | 국내    | 국외 |               |
| 110,51 | 14,660   | 3,545    | 14,300   | 21,301     | 49,809   | 6,191 | 25 | 180           |

105) 경찰청, 2008 경찰백서, 348면

대표적인 경찰 교육기관으로 중앙경찰학교는 신입경찰관 교육 및 전·의경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입교육은 일반·여경 공개채용자와 101경비단·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자 등을 대상으로 2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업무에 필요한 실무·전문지식 등을 습득하게 되며, 수료 후에는 바로 일선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에 배양함에 목적이 있다. 경찰종합학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 경위, 경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 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경위로 임용되어 경찰의 간부로 성장하는 간부후보생 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존재하는 특수사정과 수사환경을 고려한 지방경찰학교의 교육은 경찰교육의 질적·양적 영역을 확대하고 각 지방경찰청별 현장 중심의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교육에 더하여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專門化教育을 살펴보면, 2006년 경찰관 200명에 대해 「여성폭력예방 수사과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에는 경찰교육기관을 통해 8회에 걸쳐 여성·아동·장애인 등 맞춤형 피해자 조사기법 교육을 위한 「성폭력수사전문과정」을 신설하여 경찰관 320명이 교육을 수료함과 함께 성폭력전담 조사관 WORK-SHOP 실시 및 성폭력범죄 업무매뉴얼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도 경찰관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sup>106)</sup>

外形적으로는 경찰의 교육과정을 통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인권의식을 고양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참가자들의 형식적 수강과 피동적 자세, 교육참여율의 저조는 성폭력수사 전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화교육은 양적 확대와 함께 교육내용의 내실화 및 실질화라는 질적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화교육은 기성경찰관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성폭력피해자들의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인력을 활용한 교육도 가능하지만, 外部專門家를 통한 교육이 능률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경찰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와 성폭력전문가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잡힌 시각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성 경찰관들에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환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각급 경

106) 이금형, 앞의 글, 56면

찰관서별로 실시되는 월별 직장교육에서 관서장의 주관하에 성폭력수사교육의 실시를 정기화할 필요가 있다. 일선 지휘관들의 직접 교육과 교육시 점검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면접기법, 조사기법,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기법 등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의 교육과 함께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교정이 필요하다.

이와 달리 신입 경찰관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교육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즉 순경의 경우 24주 교육기간 중 성폭력수사시 피해자보호교육을 통해 처음부터 균형잡힌 시각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경찰대학이나 경찰간부후보생의 경우도 정규 커리큘럼에 피해자보호와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성 경찰관들이 안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의 형성의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경찰대학의 경우 전공기초과목으로 피해자학을 지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일반 및 개별 범죄의 피해자보호에 대한 기본 소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 2. 평가·점검체계 강화

성폭력범죄 수사에 대한 신입 경찰관과 기성경찰관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점검체계가 없다면, 수사현실에서 제대로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교육자에 대한 추수평가 등의 실시를 통해 점검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경찰은 인권상담관제의 활용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sup>107)</sup>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피해자대책계와의 협력으로 경무기획국 주관으로 각급 경찰서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화설문과, 모의사건과 피조사를 통해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피해자보호단체나 시민인권보호단 등의 활용을 통해 외부 점검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호소는 대개 피해자보호단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107) 2004년도 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사항, 第198回 定期會議, 2004.12.20. 13면

## 제6절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력관계 재정립

### 1. 협력관계 강화

현재(2007년 4월 기준) 전국에는 202개소의 성폭력상담소와 17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 2006년도 여성가족부에 집계된 상담실적은 57,865건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연중 입소된 성폭력 피해자는 353명이다. 이외에도 상담 관련 기관, 아동학대 관련 기관, 선도 보호 시설,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 쉼터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CARE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108)</sup>

민간 지원단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 없이는 경찰의 피해자대책은 '折半의 成功'을 거둘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경찰조직의 다양성으로 인해 주별로 거대 경찰서가 있는 주가 있는가하면 카운티처럼 소규모의 경찰서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욱 문제가 복잡해진다.<sup>109)</sup> 체스터카운티의 경찰서는 경찰관이 범죄피해자센터를 모르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서를 받은 경우 범죄 피해자센터의 서비스 내용과 범죄 피해자 권리장전,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등 피해자센터를 설명한 팸플릿을 건네주고 수령증명서를 작성후 경찰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충격에 빠져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무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표 14〉 민간지원단체와의 연계 실적<sup>110)</sup>

| 구 분  | 계(연계율)        | 상담<br>연계 | 법률지원<br>연계 | 의료지원<br>연계 | 심리치료<br>연계 | 보호시설<br>연계 | ONE-STOP<br>센터연계 |
|------|---------------|----------|------------|------------|------------|------------|------------------|
| '06  | 6,062(40%)    | 2,951    | 499        | 966        | 246        | 288        | 1,082            |
| '07  | 10,293(67.2%) | 5,979    | 212        | 412        | 104        | 234        | 3,352            |
| 08.6 | 4,797(63.6%)  | 2,632    | 81         | 133        | 80         | 105        | 1,766            |

108)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305면

109) 미국의 Chester County의 Annual Report(1997-1998), The Crime Victim's Center of Chester County에 의하면 성범죄 피해자의 40%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110) 이금형, 앞의 글, 60면

일본의 경우 피해자지원동경도민센타와 같은 민간피해자 지원기구가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간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sup>111)</sup>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편이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피해자의 CARE에 모든 부분을 담당할 수 없음을 과감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1.3%<sup>112)</sup>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41.2%<sup>113)</sup>라는 현실에서 성폭력범죄의 범죄적 특성을 무시한 채 수사기관만이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두 축의 하나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 구호와 지원이라는 자생적 이유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으나 국가의 필요와 계획에 의해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무자의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과의 협력 및 연계는 사실상 없다’라는 설문에 65.8%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여<sup>114)</sup> 경찰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115)</sup>

여기서 앞으로의 경찰단계에서의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와의 협력은 화해중재활동영역의 위임과 경찰의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성폭력피해자의 원호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공고화할 필요는 당연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 화해중재활동과 경찰의 피해자보호제도 사각지역해소에서 민간피해자단체와 협력을 이뤄나가야 한다.

먼저 화해중재영역의 위임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인권침해요인의 경감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종국적인 목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개선·교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가해자의 처벌과 사회복귀라는 단면적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가해자와 피해

111)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의 일반주택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상근 인력도 상담 실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112)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5 참조

113)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5 참조

114)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242-243면

115) 대한민국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 80면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가인권과제로 검찰과 연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찰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

자의 화해라는 측면에서 회복적 사범의 문제가 형사정책적 새로운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측면과 이론적 측면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화해는 불가결하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중재영역에 수사경찰관이 관여할 경우, 자칫 일방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그로 인한 보복범죄의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여기서 경찰은 화해중재영역을 민간피해자지원단체에 위임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통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피해자지원단체는 신뢰관계자로 동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들을 통한 화해중재는 현실적으로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에 대한 견제장치로 송치전 단계에서 피해자의 화해에 대한 진실성을 검증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은 개인적 요인 내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하여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피해자들의 구호에 민간피해자 지원단체와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근친상간이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구호활동이 없다면, 이들에 대한 재범 및 가해자들의 상습범죄 등 새로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ONE-STOP 지원센터와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의 특성상 이를 이용할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활동에 민간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관과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 통상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축한 수사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ONE-STOP 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상주 경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경유하여 고소의 의사가 없어 수사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의료와 상담조치의 경우는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사 개시의 여부가 성폭력 피해사실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잣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종국적으로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협력은 일정기간 동안은 요건을 구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에 대한 교부금 예산의 지원과 같은 직접적 지원과 세금감면과 같은 간접적 지원 수단을 통해 피해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지원은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의 자생력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금감면, 국가시설물의 무상임대,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행정지원 등의 간접적 지원을 통해 외국보다 20-30년 뒤쳐져 있는 민간 피해자지원단체의 육성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長期的 課題로는 이러한 단계를 지나, 민간 피해자지원단체가 수사기관이 인정, 요구하는 자격에 달하는 경우 公認認證制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발생시 경찰과 동시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ARE 업무를 현장출동 단계에서부터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이 2007년 3월부터 5개 지방청에 배치한 'CARE'팀의 확대와 함께, 이들의 한계를 보완해 줄 민간 피해자지원단체가 필요하다. 경찰은 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단계에서 ONE-STOP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보호를 실시하고, 그 이전 단계와 경찰의 피해자보호 서비스의 이용을 주저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피해자지원단체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 2. 수사 네트워크의 협력체계 강화

범죄수사에 있어 수사네트워크의 결성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이다. 민간조사인력이나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음은 물론, 가해자교정 프로그램과 피해자회복프로그램에 있어 민간과 경찰과의 협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사네트워크의 결성 시작이 매우 늦은 편이며, 현재 수사기관과 민간의 네트워크 체결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대책실이나 ONE-STOP지원센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으며,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피해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경찰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수사, 의료, 상담, 생활, 종합적 지원 등에서 이뤄질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의료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국에는 300여개가 넘는 병원

이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sup>116)</sup>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적인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 줄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미칠 경제적 손해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과 비교할 때 현저히 크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채증수단인 응급키트<sup>117)</sup>가 구비되지 않고, 전담 인력도 성폭력 피해자 구호에 무관심한 편이다.

한겨레<sup>21</sup>의 조사결과<sup>118)</sup>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전담의료기관 43곳에 전화통화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43개 기관 가운데 37.2%인 16곳에서 지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의료기관 자체에서 피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인력의 부족, 처치내용의 부지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가장 기본적인 채증도구인 응급키트의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치과 등을 제외한 서울·부산 전담의료기관 43곳 가운데 ‘키트가 없다’고 답한 곳은 서울 15곳, 부산 6곳으로 21곳에 48%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일반병원은 물론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서조차도 채증과 치료를 위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담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국립경찰병원을 비롯한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 의료기관의 유

11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도입된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제도는 매년 그 피지정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 2007년 12월 기준으로 333에 이르고 있다.

117) 응급키트는 성폭력 피해의 채증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용구들이 들어있는데, 이를 위한 증거물 채취 동의서와 진료 기록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검진결과 채취물목록, 사용안내서, 성폭력피해자 진료시 유의사항, 증거채취물흐름도 등의 서류와 손톱 밑에 있는 가해자의 상피세포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손톱깎이·손톱긁개와 가해자의 체모를 확보할 수 있는 빗·종이수건, 그리고 가해자의 정액을 채취하는 데 쓰는 멸균면봉·슬라이드글라스·슬라이드글라스 보관함, 종이봉투(겉옷·속옷·이물질 수집봉투 각 1장, 단계별 증거채취용 봉투 8장, 서식봉투 1장), EDTA 튜브 1개(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등이 들어 있다. 이러한 응급키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118) 2008년 3월 6일 제700호 참조

명무실화로 인해 존재하는 증거를 72시간 내에 채증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전전전하여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가중할 따름이다. 이는 수사 네트워크 중 중요한 한 축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은 현재 운영중인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현실화, 관련부처협의를 통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시 인센티브 제공, 치료의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서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거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수사네트워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신뢰관계 동석자제도의 활성화

현행 법규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조사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은 제1항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범죄에 있어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이를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었음에도 수사실무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형식상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더라도 일체의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는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경찰수사의 인권부합도를 높여줄 수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동석자의 효과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정을 가져와 원활한 수사진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문화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주의깊게 참고인조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불안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원활한 조사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인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경우에는 더욱더 위축된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성폭력피해자의 곁에 머물게 하여,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해 있다는 위안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통상 이 단계에서는 조사 경찰관과 피해자사이에 라포르(Rapport)가 아직 형성되기 어려운 단계이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충격과 공포단계에서 자책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동석할 경우 경찰관과 피해자사이의 직접적인 라포르 형성이 되지 않지만, 신뢰자와 피해자사이에 형성된 라포르를 통해 신뢰자 - 피해자 - 경찰관의 삼각관계에서 간접적인 라포르 형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뢰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라포르는 피해자와 경찰관사이에 간접적인 라포르를 형성해주며, 이를 직접적인 라포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는 수사 경찰관의 피해자 인권침해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민간 피해자지원단체 직원의 동석으로 인하여 수사 경찰관의 인권침해적 발언과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발생하더라도 차후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 수사 경찰관은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경우 성가시며, 귀찮은 존재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 신뢰관계자의 발언이나 행동으로 피해자 진술이 연속성과 일관성을 잃으며, 신속한 수사진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초기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신뢰관계자의 동석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한다면 신뢰관계인의 수사방해활동은 많이 사라질 것이며, 조사 전에 유의사항을 확실히 고지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보다는 신뢰관계인, 특히 민간피해자지원단체 등의 동석을 통해 경찰수사의 친인권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감시자로 부정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인권부합도 향상을 위한 견제자로 인식한다면 인권 경찰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신뢰관계자의 피해자 동석을 활성화하여 피해자의 수사협력과 피해회복의 목적을 달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동석제도의 실시를 이뤄내야 한다.

## 제7절 경제적 지원절차의 개선

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 피해자 실태 조사연구’<sup>119)</sup>에 따르면 사건 후 범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상담과 대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긴급경비의 지원이 일곱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위 연구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점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때 필요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sup>120)</sup> 성폭력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성폭력피해 여성들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타의 재산범죄보다 크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병원진료를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진료, 성병예방검사, 임신반응검사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300만원까지 여성가족부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진료비의 청구가 일원화되어 피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었다. 그러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비 예산의 일부를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상담소와 시·군·구로 지급창구를 이원화함과 함께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치료비의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상담소 또는 시·군·구에 치료비(본인부담액)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즉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치료비를 환급받으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상담소 또는 시·군·구에 치료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개선으로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비 지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피해자의 출석이 종료되는 사건들도 있으며, 피해자는 경

1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 06.12 참조

120) 일본 被害者支援道民セクター 小山 博 사무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장 곤란해하는 것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역설하였다.

찰단계에서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조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 가장 빠르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피해구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즉 일선 경찰서의 여성상담실이나 여성·청소년계에서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치료비 지급은 현실적으로 예산문제 등의 난제가 있으므로 최소한 지급 신청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여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제8절 아동·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수사환경의 조성

아동과 장애인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 일반 여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정확한 피해진술이 어려우며, 범죄사실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법은 이들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아동의 바람직한 성적 성장과,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성적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兒童의 경우 언어능력의 미숙과 기억의 해리현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증언의 증거능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밀행성으로 인해 이러한 취약요인이 성인에 비해 더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여기서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 다음, 적절한 진술녹화 기법으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유아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녹화를 하더라도 유아가 경찰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만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121)</sup>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주 진술을 반복하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기법의 향상과 그를 위한 수사여건의 개선에 힘써야만 한다. 현재 238개 경찰서에 1명씩 지정된 아

121) 대전 교법 2007.1.19, 2006노335

동성폭력전담조사관인 여경이 16세 미만자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참고인조사, 즉 육하원칙에 입각한 진술요구가 아닌 피해 아동의 언어수준을 고려한 진술청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술녹화의 연령을 상향한 것도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6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 피해아동 조사 시 정신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아동전문가 등 관련 직역 전문가의 의무적 조사참여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피해 아동의 보호에 충실한 측면이 있으나, 진술녹화의 무 규정이 도입되어 어느 정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충족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보다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 내지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여시키는 것으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성폭법 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는 “법원은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의견조회 결과를 의무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준용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여 두면 되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 내지 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술하였듯이, 성폭법 제21조의 3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적 영상녹화의 대상연령을 상향하여야 한다. 현재 16세로 되어 있는 상한연령을 형법상 미성년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13세에서 16세로 연령이 상향되었으나 연령설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찾기 어려우며, 형사법이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고, 지적 불완전상태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성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여성부로 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아동 성폭력사건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화되어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해바라기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예정에 있으므로, 각 지역별 센터와 아동성폭력 수사에 대한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현시점부터는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동일한 미성년자일 경우와 성년자일 경우로 구분하여 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成年者의 경우 비정상적 성기호로 로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를 지닌 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보호는 신체의 상해와 그 치료에 중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격리<sup>122)</sup> 및 치료감호와 같은 교정프로그램과 형의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와 달리 가해자가 동일한 兒童 내지 未成年者일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수사상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통상 가해자 및 그 부모가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아동간의 장난 또는 호기심의 발동 정도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가해자의 학교 등에서도 위신실추를 우려한 범죄사실 은폐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 아동의 경우 유치원, 학교라는 초중등교육기관에의 등교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피해 아동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사실의 유포로 인하여 이른바 ‘이상한 아이’로 낙인찍히게 되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조차 심적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로서 피해자와 거주지역 및 재학 학교 등 생활영역이 일치하는 경우, 학교 — 가정 — 수사기관이라는 삼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학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조치를 실행하여야 하며, 피해 아동 父母의 심리상담에도 기여를 하여야만 한다. 이 점에서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와의 평상시 업무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사건 발생시 보건교사와의 협조체계 가동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 가해자도 미성년일 경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될 심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만 피해 아동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 및 수사의 진행이 가능하다.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 성폭력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에 있다.

障 碍 人의 경우 아동 못지않게 수사상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혼자살고 있던 시각장애 여성(25세)이 동네 80대 노인으로부터 지팡이로 찔리고 엉덩이를 맞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오다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이전에 2차례의 ‘성희롱’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무시하고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그랬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수사에 착수조차

122) 미국의 Megan’s Law나 영국의 Sex Offenders Act처럼 성범죄자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강력한 ‘격리조치’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sup>123)</sup> 이처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장애가 범죄정상관계사실의 파악에 영향을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여부의 판명에 극단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사 경찰관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즉 피해자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의 부족, 열악한 생활환경 및 가해자의 범의부정과 강한 사건은폐 고의 등의 특징들을 인식하여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피해의 수사에 있어서는 身體障礙人과 精神遲滯障礙人을 區別하여 대할 필요가 있다. 신체장애인처럼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지니고 있으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아 경찰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조사나 이동식조사실을 이용한 출장조사가 적극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시에는 반드시 더미 인형을 사용하여 범죄정황 설명시 신체장애로 인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는 달리 정상적인 사고능력에 결함을 지닌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상담소나 장애인협회의 지원을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의 경우 조사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술을 한다하더라도 잦은 번복과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증거능력 인정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동석자로서 참여하게 한다든가 진술녹화시 진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부모 등의 친족도 범죄발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며, 더욱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부모도 정신지체 장애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sup>124)</sup>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기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특히 수사기관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조사시 주안점은 장애 여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그들의 지적 능력과 신체적 장애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할 때, 여

123) 경찰청, 인권수사매뉴얼, 126면

124) 동네주민 3명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중 1명인 김모씨는 2008년 7월 10일 낮 12시께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A(24.여.지적장애 2급)씨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아산시 한 야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인근 야산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박모(51)씨와 전모(66)씨도 지난 4월부터 7월 사이 아산시 일대 모텔 등에서 각각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가 지능이 떨어지는 데다 지적장애 3급인 어머니(50)와 함께 살고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 장애인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에 있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지나치게 疏略하게 기술되어 있는 개괄적인 내용<sup>125)</sup>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125)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 66-67면.

## 제6장 결론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 경찰은 45%로 6위를 차지하였다.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은 37.2%로 8위, 그리고 사법부인 법원은 41.9%로 6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뜻밖에도 군대였다.<sup>126)</sup> 군대가 과거 사건의 축소·은폐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몇 년간刻苦의 노력으로 신뢰도 1위를 차지하였다. 인권보호기구의 설치, 민간 인권단체와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수용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상실된 신뢰를 회복해 온 것이다.

성폭력사건에 있어 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공적 기관인 경찰의 피해자 인권보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수사 경찰관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무관심에 찬 태도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1명을 CARE하는 것보다 살인죄의 용의자 1명을 검거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는 극복되어야만 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과거에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참고인조사와 신상공개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강력한 제재로 인해 이제는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와 원호를 통해 피해자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이들 국가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경찰의 임무는 수사 활동을 통한 범죄인 검거와 기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그를 통한 이전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경찰의 모습이 지나치게 수사편의주의적, 실적지향적 사고에 빠져왔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만 한다. 실체진실의 발견은 적극적 차원과 소극적 차원이 존재하며, 진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고한 시민을 처벌해서는 안

126) 2008.8.16자 중앙일보([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262773](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2&total_id=3262773))

된다는 법공체의 기본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소극적 실체진실주의의 독자적 의미를 부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간과할 수는 없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4년 ‘밀양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밀양 여중생 사건’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성폭력 범죄의 인권수사라는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피해자보호에 대한 진일보된 모습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보완한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인권부합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동 대응절차와 증거수집절차를 개선하고, 사후 CARE조치로서 ONE-STOP 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등의 산적해 있는 課題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의 전환과 그로 인한 수사절차의 개선은 단순히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만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감정과 수사기관의 수사현실 사이에 가장 괴리가 큰 범죄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관행이 변하고 친인권적인 수사절차가 자리잡는다면, 이는 경찰수사 전반으로 확대되어 경찰수사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1차적 단계를 넘어서 피해자보호와 그를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주변인(Randfigur)<sup>127)</sup>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형사절차의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자신의 입장과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라는 궁색한 대리인에만 의탁한 소외된 존재로서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범죄 피해자‘권리선언’을 채택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적극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제는 全社會的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또 다른 과제라고 할 것이다.

127) Albin Eser, Zur Renaissance des Opfers im Strafverfahren, A. Kaufmann-GS, 1989, S.724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김기두, 형사소송법(전정신판), 박영사, 1987
-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12
- 김지선·이천현·홍영오·박형민·김한균·권수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07년),  
형사정책연구원, 2007
-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 경찰청, 對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2002
- \_\_\_\_\_, 인권수사매뉴얼, 2006
- \_\_\_\_\_, 범죄피해자보호매뉴얼, 2005
- \_\_\_\_\_, 2006 경찰백서, 2006.7
- \_\_\_\_\_, 2008 경찰백서, 2008.10
- 대검찰청, 범죄통계백서, 2007
- 대한민국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
- 박선영·윤덕경·박복순·이성은·한지영,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 정  
비연구(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07.12,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8
- 법원행정처, 새로운 형사재판의 이해, 2007
- \_\_\_\_\_, 사법연감, 2005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8
- 신의기·박경래·정영오, 범죄수사력 향상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08.1
- 이경자·윤영숙·서명선,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이세정·이상윤,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이윤호, 피해자학, 박영사, 2007
- 임동규, 형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2008

-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2008.1
- 전영실·강은영·박형민·김혜정·황태정·정유희,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 억제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7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사건지원체계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1999.12.7
- \_\_\_\_\_,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200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우리 사회, 여아의 안전을 진단한다 -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2008.5.2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의 양형실태에 관한 연구, 1999
- \_\_\_\_\_, 범죄피해자 실태조사연구, 2006.12
- \_\_\_\_\_,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2004.12

#### ◎ 논문

- 김용세·김재민, “초동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2006.6
- 김용세·류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동향”,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2
- 김은주·이대성·이미정·이창한, “강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 2001.10
- 김영문,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 캐나다의 victim service제도 -”, 해외연수 검사 논문, 2001
- 김재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경찰의 행태변화를 위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3
- 노호래, “지역경찰의 피해자 보호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2005.10
-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1호, 2006.4

#### ◎ 기타

- 2004년도 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사항, 第198回 定期會議, 2004.12.20

◎ 구미문헌

- Albin Eser, Zur Renaissance des Opfers im Strafverfahren, A. Kaufmann-GS, 1989
- CRIME AND VIOLENCE PREVENTION CENTER, CRIME VICTIMS HANDBOOK, 1998
- H. Schwedinger and J. Schwedinger, Rape and Inequalit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83
- Kaiser, Günter, Kriminalogie, Ein Lehrbuch, 3. Aufl., Heidelberg, 1996
- Rob Watts, Judith Bessant and Richard, International Criminology, Routledge, 2008
- T. A. Critchley, A History of Polic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Constable, 1978

◎ 일본문헌

- 安田貴彦, 警察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対策, 警察學論集, 第56巻第1号, 2003
- 諸澤英道, 新版 被害者學入門, 成文堂, 1998
- 被害者支援道民セクター, 平成 18年度 被害者支援調査研究事業, 2007.3
- 性犯罪捜査研究會(編), 性犯罪被害者對應ハソトブック, 立花書房, 2008

연구보고서 2009-09

## 경찰단계에서의 성폭력사건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2009년 10월 발행

2009년 10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